

2019학년도 제8차 규정심의위원회

[2020. 2. 12]



금 강 대 학 교

< 목 차 >

<input type="checkbox"/>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 제정(안)	3
<input type="checkbox"/> K-MOOC 학점인정 지침 제정(안)	6
<input type="checkbox"/>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8
<input type="checkbox"/> 영어인증제 운영규정 제정(안)	13
<input type="checkbox"/> 금강대학교 학칙 개정(안)	15
<input type="checkbox"/> 금강대학교 학사내규 개정(안)	42
<input type="checkbox"/>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	66
<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개정(안)	69
<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 품질평가 규정 개정(안)	73
<input type="checkbox"/> 국내 및 해외 대학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74
<input type="checkbox"/>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79
<input type="checkbox"/> 강의전담교원 임용규정 개정(안)	80
<input type="checkbox"/> 교원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지침 개정(안)	81
<input type="checkbox"/> 학사지도교수 운영규정 개정(안)	82
<input type="checkbox"/> 시간강사 운영지침 폐지(안)	83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의서

1. 규정 제정 취지

- 학칙 및 학사내규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영어인증제가 도입되고, 비교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이 인증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일정 부분 특별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영어인증제 각 레벨별 특별학점(1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제정 규정(붙임 참조)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

제 정 : 2020. 2. 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34조 3항에 의한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학점은 정규 교과목 이외에 특별과정, 어학시험 등 정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특별히 인정되는 학점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특별과정은 본부 또는 본 대학 센터와의 협의에 의하여 특별히 개설된 과정에 한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인된 어학시험은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학점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지원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교학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점인정 교과목 지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

제5조(학점인정 및 성적) ① 특별학점의 학점인정은 [별표1]과 같다.

② 특별학점은 학기별 이수학점 범위에 포함하며, 재학 중 총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③ 특별학점 취득에 의한 성적은 당해 P/N로 부여한다.

제6조(특별학점인정 및 신청시기) ① 특별학점 신청은 매학기 개강부터 종강 전까지로 하며 신청과목은 해당학기 개설된 과목 또는 공인어학 성적표로 한다.

② 특별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기 성적처리 일정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분	기준	학점
특별과정 & 공인어학능력시험	비교과프로그램 Gate R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어학성적을 제출한 자	1학점
	비교과프로그램 Gate S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어학성적을 제출한 자	1학점
	비교과프로그램 Gate G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어학성적을 제출한 자	1학점
	비교과프로그램 Diamond Class(심화단계) 이수자	1학점

K-MOOC 학점인정 지침 제정(안) 심의서

1. 지침 제정 취지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의 활성화 유도 및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 보장

2. 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정의, 학점인정 기준, 성적처리에 대한 내용 기재

3. 제정 지침(붙임 참조)

K-MOOC 학점인정 지침

제 정 : 2020. 2.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4조에 의거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K-MOOC 학점인정”이라 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MOOC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인정기준 및 학점) K-MOOC 이수 시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받은 재학생에 대하여 과목당 1학점, 학기별 최대 3학점, 재학기간 중 최대 6학점까지 일반선택 또는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신청시기 및 절차) ①특별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일정 기간 내 K-MOOC 학점인정 신청서와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성적처리) ①K-MOOC 특별학점의 성적은 P/N으로 표기한다.

② 학점인정은 독립학기(계절학기)로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의서

1. 규정 제정 취지

-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 공포(‘18.12.18.) 및 시행(‘19.8.1.)에 따른 본교 강사 관련 규정 제정

2. 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강사의 법적지위, 신분보장, 교수시간, 임용 등 강사법 주요내용 포함
- 본 규정 제정에 따라 기존 「시간강사 운영지침」 폐지

3. 제정 규정(붙임 참조)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 2020. 2. 00.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임용일 현재 만65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3조(임용일) 강사의 임용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학기 중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임용기간)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과건·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제2장 신규임용 및 재임용

제5조(교원인사위원회)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사의 임용에 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강사의 신규임용과 재임용 동의
2. 비위행위가 있는 강사의 면직 동의
3.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4. 그 밖의 강사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강사의 신규임용은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영역과 교양영역을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강사의 재임용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신규채용 절차) ①총장은 담당 과목명, 배정시간,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최소 5일 이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경우 학문후속세대(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등을 말한다)의 강사임용기회 보장을 위해 분야별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강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임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③임용심사위원회는 강사 신규임용 기초·전공심사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고, 총 점수 순에 따라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로 총장에게 추천한다.

④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추천한 임용 예비 순위자를 포함한 신규강사의 임용 동의를 심의한다.

⑤총장은 최고 득점자가 임용을 포기(3회 이상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때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차순위 득점자가 임용을 포기한 때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신규채용 지원서류)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사람은 지원자격의 확인, 기초·전공심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강사임용지원서
2. 강의계획서
3. 기타 채용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제10조(계약제 임용 등) ①총장은 임용기간, 강의시간, 강의에 따른 인건비,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강사를 임용한다.

②신규임용일 이후 휴직·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다시 신규임용하거나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1년 미만으로 강사를 임용한 때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강사의 경우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에 따라 만료사실을 통보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강사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신청한 해당 강사에 대해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총장은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강사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강사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⑨강사를 신규임용하거나 재임용할 때에는 강사 임용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재임용 평가) 제10조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강의계획서, 성적입력 등 기한 준수 여부
2. 강의계획(작성)의 적절성
3. 수업품질 개선보고서(CQI) 작성 여부
4. 강의평가 결과
5. 휴·보강 준수 여부

6.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참여(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청렴교육 등)

제12조(면직사유 등)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규채용, 재임용 평가 시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 성적입력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소속 학부(학과, 전공)이 폐지된 경우
5.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6. 품위손상의 정도가 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 기타 임용계약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당연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한 때
2.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강사. 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3.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정직 등을 포함하여 총 3년이 도래한 때

제3장 처우 및 의무

제14조(강의시간) 강사는 학기별로 매주 6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조건 및 복무 등) ①강사는 본교의 교육이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③강사는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강사는 담당 교과목을 강의하여야 하며,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CQI 보고서 등) 작성
2. 수업시간 내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상담 및 지도
3.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이수
4.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교육과 연계되는 사항

제16조(휴직) ①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②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세부사항)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강사는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시간강사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영어인증제 운영규정 제정(안) 심의서

1. 규정 제정 취지

- 영어인증제란 영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영어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더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관련 규정 제정

2. 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영어인증제 적용원칙, 대체인증, 인증절차, 증빙서류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

3. 제정 규정(붙임 참조)

영어인증제 운영규정

제 정 : 2020. 2.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사내규 제70조 제1항에 따라 영어인증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영어인증제란 영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영어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더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① 모든 학생은 재학 중 별표1 “영어인증 기준”에 따라 영어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은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0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영어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로터스칼리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영어인증) ① 영어인증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공인인증점수 기준을 충족한 후, 원어 전공수업을 이수하고 최종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점수는 공인시험성적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공인시험성적표는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하며, 입학 전 취득 성적도 인정한다.

④ 각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유급생은 학기 또는 계절학기를 통하여 재수강하거나 각 단계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대체인증) ① 별표1 “영어인증 기준”에 따라 공인인증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영어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② 해외대학에서 2년(4학기) 수학한 GGU Global Ambassador 학점교류 학생은 원어전공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7조(인증절차) ① 제6조에 따라 영어인증으로 대체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종강 일까지 영어인증 대체신청원(별지서식1)을 제8조에 명시된 증빙서류와 함께 로터스칼리지로 제출한다.

② 로터스칼리지 운영위원회는 성적입력 기간 전에 영어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③ 로터스칼리지는 영어인증 결과 및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교학지원처는 영어인증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제8조(증빙서류) 대체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 분야별 증빙서류를 아래 각 호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① 영어 성적을 통한 인증 : 영어 공인시험성적표, GGU Global Ambassador 학점교류 성적표 등

② 증빙서류 : 성적표 원본

제9조(최종평가) ① 영어인증제를 따르는 학생은 졸업하는 학기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해야 한다.

② 로터스칼리지 운영위원회는 최종평가를 위하여 전문위원 약간인을 위촉한다.

③ 최종평가에서는 일반 및 전공 관련 영어능력을 평가하고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규정은 2020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어인증 기준

트랙 구분			1-2학년			3-4학년	
			Gate R (1단계)	Gate S (2단계)	Gate G (3단계)	원어전공 수업	최종평가
1) 비교과 프로그램			Bronze Class	Silver Class	Gold Class	1과목 (3학점)	전문위원 평가 (인터뷰)
2) 공인 시험 기준	TOEIC & 스피킹	TOEIC	60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TOEIC SPEAKING 또는 OPIc	TOEIC SPEAKING 5급 이상 또는 OPIc IM1 이상	TOEIC SPEAKING 6급 이상 또는 OPIc IM2 이상	TOEIC SPEAKING 7급 이상 또는 OPIc IM3 이상		
	TOEFL		iBT 60점 이상	iBT 70점 이상	iBT 80점 이상		
※ 상기 2가지 트랙 중 택1							

- 1) 입학 시 영어 공인점수 또는 GGU 자체 진단고사를 통하여 단계별로 배치함
- 2) Gate G(3단계)를 통과하면 원어전공수업을 이수하고 최종평가를 받아야 함
- 3) 입학 시 Gate G(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별도의 심화단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교과목 “대학 영어1”과 “대학 영어2”를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단, 영어 공인시험성적표 제출자에 한함)

학칙 개정(안) 심의서

1. 규정 개정 취지

- 조직개편, 학제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체계화된 학사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조직, 휴학, 수업, 학적, 복수전공, 자율설계융합전공 등 내용 구체화

3. 신구대조표 (붙임 참조)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불교정신과 천태종의 중창 이념을 구현하고자 설립한 금강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교육목표 및 목적) ①자아완성, 국가와 사회에 봉사, 세계인류 평화에 이바지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p> <p>②자신의 참 성품을 찾아 사회를 선도·봉사하는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정보활용 능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안목과 열정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며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세계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p> <p>제2조의 1(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3조(조직·정원) ①본-대학교에 불교인문학부, 공공정책학부, 일반대학원을 둔다.</p> <p>②불교인문학부에는 불교학전공을, 공공정책학부에는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경영학전공을 둔다.</p> <p>③본-대학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p> <p>④일반대학원에는 불교학과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좌동)</p> <p>제2조(교육목표 및 목적) (좌동)</p> <p>제2조의 1(자체평가)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조직 (2020.2. .신설)</u></p> <p>제3조(조직) ①<u>본교에 불교인문학부, 공공정책학부, 일반대학원, 로터스칼리지를 둔다. (2020.2. .개정)</u></p> <p>제4조(교직원) ①<u>본교에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등 교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및 조교를 둔다. (2020.2. .신설)</u></p> <p>②<u>제1항의 교원이외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020.2. .신설)</u></p> <p>③<u>교원은 대학(원), 학부(전공), 또는 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소, 부설교육기관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p>	<p>로터스칼리지 ‘학부개념’의 학제 운영</p> <p>서울대학교 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충남대학교 학칙 등 타학교를 참고하여 조직, 교직원, 교원, 대학, 대학원으로 구분하여 문구 추가</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4조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각도서관 2. 정보지원센터 3. 기숙사 4. 보건실 5. 교수학습지원센터 6. 신문방송사 	<p>(2020.2. .신설) ④본교의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부설교육기관, 사무 조직에 부서 및 기관의 장을 둘 수 있다. (2020.2. .신설) ⑤본교의 각 대학, 대학원, 학부, 로터스칼리지에 장을, 전공에 전공주임교수를 각각 둘 수 있다. (2020.2. .신설) ⑥교직원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0.2. .신설) 제5조(대학) ①본교에 불교인문학부, 공공정책학부, 로터스칼리지를 둔다. (2020.2. .개정) ②불교인문학부에는 불교학전공을, 공공정책학부에는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경영학전공을 둔다. ③본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2020.2. .개정) 제6조(행정조직) ①본교에 대학혁신추진본부와 교학지원처, 기획관리처를 둔다. (2020.2. .신설) ②기타 행정조직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2020.2. .신설) 제7조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본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2020.2.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각도서관 2. 정보지원센터 3. 기숙사 4. 보건실 5. 교수학습지원센터 6. 신문방송사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7. 대학출판부 8. 산학협력단 9. 취업지원센터 10. 창업보육센터 11. 학생상담센터 12. 양성평등센터</p> <p>②본-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1. 불교문화연구소 2. 통번역연구소 3. 사회복지연구소 4. (폐지) 5. 중국문체연구소</p> <p>③본-대학교에 다음의 부설교육기관을 둔다. 1. 금강어학원 2. 평생교육원</p> <p>④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부설교육기관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p> <p>⑤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원각도서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수업연한·재학연한</p>	<p>7. 대학출판부 8. 산학협력단 9. 취업지원센터 10. 창업보육센터 11. 학생상담센터 12. 양성평등센터 <u>13. 교육역량관리센터 (2020.2. .신설)</u> <u>14. 교양교육센터 (2020.2. .신설)</u> <u>15. 지속가능발전센터 (2020.2. .신설)</u> <u>16. 사회봉사센터 (2020.2. .신설)</u></p> <p>②<u>본교</u>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2020.2. .개정) 1. 불교문화연구소 <u>2. (폐지) (2020.2. .삭제)</u> 3. 사회복지연구소 4. (폐지) <u>5. (폐지) (2020.2. .삭제)</u></p> <p>③<u>본교</u>에 다음의 부설교육기관을 둔다. (2020.2. .개정)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학사일반 (2020.2. .개정)</p>	<p>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역량관리센터, 교양교육센터, 지속가능발전센터, 사회봉사센터 신설</p> <p>통번역연구소 폐지</p> <p>중국문체연구소 폐지</p> <p>제2장 (수업연한·재학연한), 제3장 (학년·학기·수업일수·휴업일)을 제3장 (학사일반)으로 통합</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5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졸업자의 경우 수업연한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p> <p>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p> <p>제3장—학년·학기·수업일수·휴업일</p> <p>제7조(학년·학기) ①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매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누며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 여름학기, 겨울학기 <p>다만, 총장이 필요에 따라 2주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8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p>	<p>제8조(수업연한) ①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조기졸업자의 경우 수업연한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2020.2. .개정) ②학·석사통합과정은 6년(12학기)으로 한다. 다만, 학·석사통합과정에서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2020.2. .신설)</p> <p>제9조(재학연한) (좌동)</p> <p>제3장 학년·학기·수업일수·휴업일 (2020.2. .삭제)</p> <p>제10조(학년·학기) ①본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020.2. .개정) ② (좌동)</p> <p>제11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법정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장으로 매학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보강을 시행하여야</p>	<p>조 번호 변경</p> <p>유연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석사통합과정 신설</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휴강 및 보강에 대한 명문화</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9조(휴업일) ①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11월 7일) 하고 <u>하기 및 동기</u> 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라 정한다.</p> <p>②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p> <p>③총장은 비상재해 등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입학·편입학·재입학</p> <p>제10조(입학시기, 입학허가 및 취소) ①입학시는 매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p> <p>②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u>절차에 따라</u> 등록하여야 한다.</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 반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p>한다. (2020.2. .신설)</p> <p>제12조(휴업일) ①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11월 7일) 하고 <u>하계 및 동계</u> 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20.2. .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입학·편입학·재입학</p> <p>제13조(입학시기, 입학허가 및 취소) ①입학시기는 매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p> <p>②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u>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u> (2020.2. .개정)</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학생의 학적상태(합격, 입학허가, 재학, 휴학, 재적, 졸업)와 상관없이 합격 또는</u>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020.2.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p>조 번호 변경</p> <p>하기 및 동기 → 하계 및 동계로 명칭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입학 절차 구체화</p> <p>학생의 학적상태 구체화</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11조(입학자격) 입학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p>제12조(입학절차) 입학절차는 모집시에 공고한다.</p> <p>제13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p>② 입학전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p>제14조(일반편입학·학사편입학) ① 본-대학교는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을 실시한다.</p> <p>② 일반편입학의 경우 제3학년에 일반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관계법이 정한 기준의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p>	<p>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p> <p>제14조(입학자격) 학사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로 한다. (2020.2.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020.2. .개정)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020.2. .개정)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20.2. .신설) 4.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020.2. .신설) <p>제15조(입학절차) (좌동)</p> <p>제16조(입학전형) (좌동)</p> <p>제17조(일반편입학·학사편입학) ① 본교는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을 실시한다. (2020.2. .개정)</p> <p>② 일반편입학의 경우 제3학년에 일반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u>전문대학졸업자(예정자)</u>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관계법이 정한 기준의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2020.2. .</p>	<p>조 번호 변경</p> <p>학사 입학자격 추가</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일반편입학의 자격으로 전문대학졸업자(예정자) 추가</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③학사편입학의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학사편입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10% 이내이면서 제3학년 입학 총 정원의 5% 이내로 한다.</p> <p>④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의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p> <p>⑤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요건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p> <p>⑥대학원의 석·박사과정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15조(재입학)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재입학 신청자에 대하여는 학부별 심사(1학년 재입학자 제외)를 거쳐 적격자 선발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한다.</p> <p>③제50조에 따라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④제28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한 자가 다시 동 28조 6호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⑤재입학자의 종전 성적경고 및 휴학 횟수는 재입학 시점 이후부터 재산정한다.</p> <p>⑥재입학의 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p>	<p>개정)</p> <p>③학사편입학의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학사편입할 수 있다. (2020.2. 개정)</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제18조(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정원의 여석 <u>범위 내에서</u>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20.2. 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인원은 별도로 결정되므로 학칙에 표현할 필요 없음</p> <p>조 번호 변경 퇴학 → 자퇴로 명칭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전과</p> <p>제16조(전과) ①전과는 재학 중에 소속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삭제 ③전과 희망자는 학사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전과는 <u>재학중</u>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전과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p>제17조(학부 및 학과변경자의 교육과정 이수) 학부 및 학과(전공)를 변경한 자는 변경된 해당 학부 및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전과</p> <p>제19조(전과) (좌동)</p> <p>②전과 희망자는 학사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전과는 <u>재학 중</u>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전과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p>제20조(학부 및 학과변경자의 교육과정 이수)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번호 재조정</p> <p>조 번호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등록·수강신청</p> <p>제18조(납부고지) 등록금의 금액 및 납부기일은 등록 기일 이전에 공고한다.</p> <p>제19조(입학생의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카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20조(재학생의 등록) 재학중인 자는 매학기 지정된 카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등록금의 납부와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수료생은 예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등록·수강신청</p> <p>제21조(납부고지) (좌동)</p> <p>제22조(입학생의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u>기일 내</u>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23조(재학생의 등록) ①<u>재학 중인</u> 자는 매학기 지정된 <u>기일 내</u>에 등록금의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수료생은 예외로 한다. ②<u>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단,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제외한다.</u> (2020.2. .신설) ③「<u>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u>」에 따라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미등록 학생 조치사항 신설</p> <p>교환학생, 연수 성적은 학기 개시 일 이전에 성적 처리가 불가하여 장학 등록으로 선 처리함. 추후 성적 처리 후 등록금 납부자로 될 경우(장학금 지급기준</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21조(등록금의 징수 방법) ①등록금은 학기별로 징수하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납부기일을 3개월까지 연장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p> <p>②8학기를 초과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징수한다.</p> <p>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등록금의 6분의 1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등록금의 3분의 1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p>	<p><u>로 인정 시 대학교 장학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등록금 납부 통보를 받은 1주일 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0.2. .신설)</u></p> <p>제24조(분할납부 방법) ①등록금은 학기별로 징수하되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한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020.2. .개정)</p> <p>②단, 계절학기 수강생 및 당해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0.2. .신설)</p> <p>③분할납부 기간 및 비율은 다음 표의 원칙에 따른다. (2020.2. .신설)</p> <table border="1" data-bbox="790 719 1451 927"> <thead> <tr> <th rowspan="2">분납차수</th> <th>등록금액</th> <th colspan="2">납부시기</th> </tr> <tr> <th>4회 분납</th> <th>1학기</th> <th>2학기</th> </tr> </thead> <tbody> <tr> <td>1회</td> <td>등록금의 25%</td> <td>2월</td> <td>8월</td> </tr> <tr> <td>2회</td> <td>등록금의 25%</td> <td>3월</td> <td>9월</td> </tr> <tr> <td>3회</td> <td>등록금의 25%</td> <td>4월</td> <td>10월</td> </tr> <tr> <td>4회</td> <td>등록금의 25%</td> <td>5월</td> <td>11월</td> </tr> </tbody> </table> <p>②학사과정 학생은 제5조 1항에 의한 수업연한이 <u>지났으나</u>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u>납부하여야 한다.</u> (2020.2. .개정)</p> <p>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등록금의 6분의 1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등록금의 3분의 1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p> <p>③학사학위 취득 유예자가 강의 수강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0.2. .신설)</p>	분납차수	등록금액	납부시기		4회 분납	1학기	2학기	1회	등록금의 25%	2월	8월	2회	등록금의 25%	3월	9월	3회	등록금의 25%	4월	10월	4회	등록금의 25%	5월	11월	<p>점수 미달) 지정 기한 내 등록금 납부 명문화 (장학기준이 12학점 이상인데, F학점을 받을 경우 장학 기준에 미달)</p> <p>조 번호 변경</p> <p>분할납부 신청 절차 명문화</p> <p>분할납부 제외 대상자 명문화</p> <p>분할납부 기간 및 비율 기준 마련(현재 분할납부 금액 기준이 없어 학생마다 분할금액이 상이함)</p> <p>추가 등록생(학사과정·학사학위 취득 유예자)을 구분하여 납부 기준 마련</p>
분납차수	등록금액		납부시기																						
	4회 분납	1학기	2학기																						
1회	등록금의 25%	2월	8월																						
2회	등록금의 25%	3월	9월																						
3회	등록금의 25%	4월	10월																						
4회	등록금의 25%	5월	11월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22조(등록금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등록금이 과오 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p> <p>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며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장학금 부분은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입대휴학자의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삭제)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p>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등록금의 6분의 1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등록금의 3분의 1</p> <p>제25조(등록금의 반환)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u>그밖에</u>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u>못하게</u> 된 경우 (2020.2. 개정) 	<p>조 번호 변경</p> <p>문구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경제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할 경우, 1주일 연장하여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단, 경제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2020.2. 개정)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p>제23조(수강신청) ①채학중인 자는 매학기 지정된 카 일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휴학·복학·퇴학·제적</p> <p>제24조(휴학) ①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질병휴 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이하 “육아휴학”이라 한다.), 장 기인턴십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p> <p>②채학중인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수 업일수의 4분의 3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대휴학은 입대일을 기준 으로 한다.</p>		<p>제26조(수강신청) ①채학 중인 자는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 등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20.2.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휴학·복학·<u>자퇴</u>·제적</p> <p>제27조(휴학) ① (좌동)</p> <p>②채학 중인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수 업일수의 4분의 3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와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정기간이 아니더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20.2. 개정)</p>		<p>조 번호 변경</p> <p>수강신청 범위(변경 및 취소) 수정</p> <p>퇴학→자퇴로 명칭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정기 휴학신청 제외 경우 구체화</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③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p> <p>④일반휴학자가 징집에 의하여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한 입대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⑤법정전염병, 정신병질환을 가진 자는 동조 2항 및 3항에 불구하고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p> <p>제25조(휴학기간) ①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 이내로 하며 통산기간에 대하여는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병역복무휴학, 육아휴학(만 8세이하 자녀 양육사), 장기인턴십휴학, 창업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때 육아휴학과 장기인턴십휴학, 창업휴학은 통산하여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휴학과 장기인턴십휴학은 관련 증빙서류를, 창업휴학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해당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p> <p>제26조(복학) 복학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중에 허가한다.</p> <p>제27조(퇴학) 퇴학을 희망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28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제28조(휴학기간) ①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 이내로 하며 통산기간에 대하여는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u>입대휴학</u>, 육아휴학(<u>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u> 8세 이하 자녀 양육사), 장기인턴십휴학, 창업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때 육아휴학과 장기인턴십휴학, 창업휴학은 <u>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u> 육아휴학과 장기인턴십휴학은 관련 증빙서류를, 창업휴학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해당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0.2. .개정)</p> <p>② (좌동)</p> <p>제29조(복학) 복학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중에 <u>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복무자는 전역일 기준 학기말까지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u> (2020.2. .개정)</p> <p>제30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2. .개정)</p> <p>제31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p>	<p>조 번호 변경</p> <p>육아휴학의 기간 구체화</p> <p>휴학기간 및 추가 신청기간 구체화</p> <p>조 번호 변경</p> <p>복학 신청 절차 명문화</p> <p>병역 복무자의 복학기간 명문화</p> <p>조 번호 변경</p> <p>본교에서 사용하는 ‘자퇴원’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이 제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학기 지정된 카일내에 휴학의 허가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분할납부의 대상자중 잔여 등록금을 카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등록을 <u>필한후</u>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아니한 자 4. 다른 학교에 입학한 자 5.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6.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7. 재학(또는 휴학)중인 자가 사망시 8.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으로 첫 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1.00미만인 자 <p>제8장 교과·학점·수업·졸업</p> <p>제29조(교육과정 및 교과목구분)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인증과정으로 구분하고,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졸업인증교과목 및 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한다.</p> <p>제30조(교육과정 편성·이수) ①교양과정은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으로 편성 운영한다. ②전공과정은 해당 학문의 전문 학술 연구에 직접 필</p>	<p>이 제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학기 지정된 <u>기일 내</u>에 휴학의 <u>허가 없이</u>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020.2. .개정) 2. 분할납부의 대상자중 잔여 등록금을 <u>기일 내</u>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등록을 <u>완료 후</u>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아니한 자 4. 다른 학교에 입학한 자 (2020.2. .개정) 5. 휴학기간 <u>만료 후 등록기간에</u> 복학하지 아니한 자 (2020.2. .개정) 6.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7. <u>제 6호에 의거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u> (2020.2. .신설) 8. 재학(또는 휴학)중인 자가 사망시 9.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으로 첫 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1.00미만인 자 10. <u>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u> (2020.2. .신설) 11. <u>징계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은 자</u> (2020.2. .신설) <p>제8장 교과·학점·수업·졸업</p> <p>제32조(교육과정 및 교과목구분) <u>학사과정의</u>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인증과정으로 구분하고,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졸업인증교과목 및 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한다. (2020.2. .개정)</p> <p>제33조(교육과정 편성·이수) ① (좌동) ② (좌동)</p>	<p>성적경고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한 이후에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제적 대상에 추가</p> <p>미등록 제적 추가</p> <p>퇴학 처분에 따른 제적 추가</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요한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한다.</p> <p>③졸업인증과정은 졸업 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과 글로벌 역량 및 인성을 키우기 위하여 영어, 중국어 또는 일어, 컴퓨터, 독서, 그리고 봉사 등의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한다.</p> <p>④일반선택과목의 이수는 다른 학부 및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모든 전공 교과목으로 하되 이수 학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p> <p>⑤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p> <p>제31조(학점 및 수업) ①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수업시간의 단위는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p>②1학점의 이수는 1학기당 이론 또는 실험·실습·실기를 포함하여 15시간 이상의 강의로 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한 수업일수 감축 시에는 감축된 해당 시간만큼 제외한다.</p> <p>③기타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과 수업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32조(학기당 이수학점) 재학중인 자의 최대 이수학점은 21학점으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4.00 이상인 자는 최대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p>	<p>③졸업인증과정은 졸업 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과 글로벌 역량 및 인성을 키우기 위하여 영어, 중국어 또는 일어, 컴퓨터, 독서, 그리고 봉사 등의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한다.</p> <p>④ (좌동)</p> <p><u>⑤교육과정 편성 또는 개편 시 사회수요, 핵심역량 및 학습 성과 측정결과, 강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0.2. .신설)</u></p> <p>⑥ (좌동)</p> <p>제34조(학점 및 수업) ① (좌동)</p> <p>②(좌동)</p> <p><u>③기타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과 정규 교과목 이외에 어학시험, 특별과정 등 정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특별히 인정되는 학점은 따로 정한다. (2020.2. .개정)</u></p> <p>제35조(학기당 이수학점) 재학 중인 자의 최대 이수학점은 21학점으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4.00 이상인 자는 최대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p>	<p>교육과정의 사회수요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p> <p>조 번호 변경</p> <p>K-MOOC 학점,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내용 추가</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33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편입학자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p> <p>②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p>	<p>제36조(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2020.2.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재입학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0.2. 신설)</p>	<p>조 번호 변경</p> <p>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신설</p>
<p>제34조(타 대학·기관 학점인정) 재학중인 자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다른 대학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를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 인정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경우는 협약에 따른다.</p>	<p>제37조(타 대학·기관 학점인정) 재학 중인 자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다른 대학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 인정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경우는 협약에 따른다.</p>	<p>조 번호 변경</p>
	<p>제38조(학위과정의 연계)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0.2. 신설)</p> <p>제39조(학위과정의 통합)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석사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0.2. 신설)</p>	<p>조 번호 변경</p> <p>학위과정의 연계 신설</p> <p>조 번호 변경</p> <p>학위과정의 통합 신설</p>
<p>제35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학과(전공)별로 필요한 교과목 구분별 학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p>제40조(졸업학점)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제36조(학년수료) ①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p>	<p>제41조(학년수료) ①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는 최소 등록학기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07 300 757 483"> <thead> <tr> <th>학년</th> <th>등록학기</th> <th>취득학점</th> </tr> </thead> <tbody> <tr> <td>1학년</td> <td>2개 학기</td> <td>졸업학점의 1/4</td> </tr> <tr> <td>2학년</td> <td>4개 학기</td> <td>졸업학점의 2/4</td> </tr> <tr> <td>3학년</td> <td>6개 학기</td> <td>졸업학점의 3/4</td> </tr> <tr> <td>4학년</td> <td>8개 학기</td> <td>졸업학점의 4/4</td> </tr> </tbody> </table> <p>※ 취득학점은 소수점 이하 절상하여 작용</p> <p>②해당 학년까지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하며 별지서식(3)의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제37조(졸업자격) ①졸업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p>②제1항에서 정한 자격 외에도 재학생들이 졸업 후 국가사회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글로벌역량, 직무수행역량을 키우는 졸업인증교과목과 연계하여 졸업자격요건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38조(졸업과 학위) ①졸업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 2의 학위에 의하여 별지서식(1)의 국문 및 영문학위증을 수여한다.</p> <p>②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서식(2)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수료후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p>③졸업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2학기 범위 내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유예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학년	등록학기	취득학점	1학년	2개 학기	졸업학점의 1/4	2학년	4개 학기	졸업학점의 2/4	3학년	6개 학기	졸업학점의 3/4	4학년	8개 학기	졸업학점의 4/4	<p>는 최소 등록학기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p> <p>(좌동)</p> <p>②해당 학년까지 등록을 <u>완료</u>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하며 별지서식(3)의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u>(2020.2. .개정)</u></p> <p>제42조(졸업자격) 졸업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u>(2020.2. .개정)</u></p> <p>② (삭제) <u>(2020.2. .삭제)</u></p> <p>제43조(졸업과 학위) (좌동)</p> <p>③졸업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2학기 범위 내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으며 <u>학사학위 취득 유예</u>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u>(2020.2. .개정)</u></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명칭변경</p>
학년	등록학기	취득학점															
1학년	2개 학기	졸업학점의 1/4															
2학년	4개 학기	졸업학점의 2/4															
3학년	6개 학기	졸업학점의 3/4															
4학년	8개 학기	졸업학점의 4/4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④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p>⑤ 총장은 학위를 받은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복수전공·자율설계전공</p> <p>제39조(전공의 선택) 채학 중인 자는 소속 학부 및 학과(전공) 이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소속 학부 내 타 학과(전공) 또는 타 학부내 학과(전공) 과정을 복수전공이나 자율설계융합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삭제)</p> <p>제40조(복수전공·자율설계전공) 복수전공·자율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시험·성적</p> <p>제41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p>	<p>④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u>규정으로</u> 따로 정한다. (2020.2. .개정)</p> <p>⑤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전공선택, 복수전공, 자율설계융합전공 (2020.2. .개정)</p> <p>제44조(전공선택) ①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2학기 기간 내에 신청하여 3학기부터 적용한다. (2020.2. .신설)</p> <p>②전공의 선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2020.2. .신설)</p> <p>제45조(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 본인 소속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외에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2020.2. .신설)</p> <p>1. 복수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2020.2. .신설)</p> <p>2. 자율설계융합전공 :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전공 (2020.2.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시험·성적</p> <p>제46조(시험) ① (좌동)</p>	<p>본교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이 따로 있음</p> <p>전공선택 추가</p> <p>조 번호 변경 전공선택의 신청 및 적용기간 명문화</p> <p>조 번호 변경 명칭통일(자율설계융합전공)</p> <p>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 설명</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그 외의 시험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p> <p>제42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간 및 기말고사 60점 이내, 과제평가 20점 이내, 출석상황 20점 이내, 학습태도 및 수업참여도 20점 이내, 기타 20점 이내 범위에서 평가한다(단, 현장실습과목 제외). 다만,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기타 성적에 관계없이 F등급을 부여한다.</p> <p>② ①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자의 경우, 잔여학점이 30학점이내인 4학년에 한하여 출석은 재직증명서 등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고, 성적은 시험 또는 과제 제출을 근거로 부여할 수 있다.</p> <p>제43조(성적등급) ①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시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00 1102 757 1385"> <thead> <tr> <th>등급</th> <th>평점</th> <th>백분위점수</th> <th>등급</th> <th>평점</th> <th>백분위점수</th> <th>등급</th> <th>평점</th> <th>백분위점수</th> </tr> </thead> <tbody> <tr> <td>A+</td> <td>4.3</td> <td>100-97</td> <td>C+</td> <td>2.3</td> <td>79-77</td> <td>F</td> <td>0.0</td> <td>62이하</td> </tr> <tr> <td>A0</td> <td>4.0</td> <td>96-94</td> <td>C0</td> <td>2.0</td> <td>76-74</td> <td></td> <td></td> <td></td> </tr> <tr> <td>A-</td> <td>3.7</td> <td>93-90</td> <td>C-</td> <td>1.7</td> <td>73-70</td> <td></td> <td></td> <td></td> </tr> <tr> <td>B+</td> <td>3.3</td> <td>89-87</td> <td>D+</td> <td>1.3</td> <td>69-67</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등급	평점	백분위점수	등급	평점	백분위점수	등급	평점	백분위점수	A+	4.3	100-97	C+	2.3	79-77	F	0.0	62이하	A0	4.0	96-94	C0	2.0	76-74				A-	3.7	93-90	C-	1.7	73-70				B+	3.3	89-87	D+	1.3	69-67				<p>②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개시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2. .신설)</p> <p>제47조(성적평가) (좌동)</p> <p>제48조(성적등급) (좌동)</p>	<p>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방안 마련</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등급	평점	백분위점수	등급	평점	백분위점수	등급	평점	백분위점수																																							
A+	4.3	100-97	C+	2.3	79-77	F	0.0	62이하																																							
A0	4.0	96-94	C0	2.0	76-74																																										
A-	3.7	93-90	C-	1.7	73-70																																										
B+	3.3	89-87	D+	1.3	69-67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B0	3.0	86-84	D0	1.0	66-64					
B-	2.7	83-80	D-	0.7	63					
<p>②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교과목은 합격(P) 또는 불합격(N)으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학점에만 포함되고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된다.</p> <p>제44조(학점인정)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D-급 이상 또는 합격(P)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p> <p>제45조(재이수) ①모든 교과목은 취득 성적이 C+ ~ F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재이수는 3과목 이하로 제한한다. 단 졸업인증교과목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p> <p>②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이수 성적등급 취득과 동시에 그 이전의 성적등급은 무효 처리한다. 다만, 재이수 성적이 과락(F)일 경우는 기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p> <p>제46조(성적평점평균의 계산) ①과목별 성적평점의 계산은 그 과목의 학점수와 성적등급의 평점을 곱하여 산출한다.</p> <p>②성적평점평균의 계산은 학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하며, 소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p> <p>③순위계산은 취득학점수가 다르고 성적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p> <p>④성적등급에 P와 N으로 표시되는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성적평점평균 및 순위계산에서 제외한다.</p> <p>제47조(예비성적경고 및 성적경고) ①매학기 학업성</p>									<p>제49조(학점인정) (좌동)</p> <p>제50조(재이수) ① (좌동)</p> <p>②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이수 성적등급 취득과 동시에 그 이전의 성적등급은 무효 처리한다. 다만, 재이수 성적이 과락(F)일 경우는 기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p> <p>제51조(성적평점평균의 계산) (좌동)</p> <p>제52조(예비성적경고 및 성적경고) ①(좌동)</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적의 평점평균이 2.00미만인 학생은 예비성적경고한다. ②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0미만인 학생은 성적경고한다. ③성적경고(예비성적경고 포함)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학사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으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때 학생상담의 결과를 전산상이나 문서로 상담내용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학사지도교수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포상과 징계</p> <p>제48조(포상) 재적자 중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49조(우등생) ①학기 성적이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기우등생으로 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8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삭제) 2. 17학점 이수자로 성적평점평균이 3.70 이상인 자(삭제) 3. 15학점 내지 16학점 이수자로 성적평점평균이 3.90 이상인 자(삭제) <p>②졸업대상자로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우등생으로 하고 학적부(삭제) 및 학위증서에 기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 최우등생 (삭제) 	<p>②(좌동)</p> <p>③성적경고(예비성적경고 포함)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학사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으면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성적경고자는 <u>다음 학기 개시 후 12주 이내에 학교에 서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020.2. 개정)</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포상과 징계</p> <p>제53조(포상) (좌동)</p> <p>제54조(우등생) (좌동)</p>	<p>성적경고자에 대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학사경고자 사후관리 마련</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2. 성적평점평균이 3.70 이상인 자 : 우등생 (삭제)</p> <p>제50조(징계) ①총장은 재적자가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p> <p>②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p> <p>③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부서장의 사건경위서 작성(본인의 진술서 및 지도교수의 의견서 포함)후 해당위원회 상정 2. 해당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의견 청취(필요시 지도교수의 참고 발언 청취) 3. 해당위원회 심의 <p>④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p>	<p>제55조(징계)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장 학 금</p> <p>제51조(장학금) ①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장 학 금</p> <p>제56조(장학금)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장 위탁생·외국인 등</p> <p>제52조(위탁생) ①정부 각 부처 재직자로서 소속 장관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u>교육인적자원부장관</u>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위탁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되 지정된 시험을 거쳐 수학이 허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수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장 위탁생·외국인 등</p> <p>제57조(위탁생) ①정부 각 부처 재직자로서 소속 장관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u>교육부장관</u>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u>학업</u>을 허가할 수 있다.</p> <p>(2020.2. .개정)</p> <p>② (좌동)</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53조(장애인·외국인 등) ①장애학생에게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한다.</p> <p>②외국인으로서 제4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의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54조(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학칙을 준용한다.</p>	<p>제58조(장애인·외국인 등) (좌동)</p> <p>제59조(준용)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공개강좌</p> <p>제55조(공개강좌) ①본-대학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p> <p>②공개강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공개강좌</p> <p>제60조(공개강좌) ①본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u>개설할</u> 수 있다. (2020.2. .개정)</p> <p>②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장 교원의 교수시간</p> <p>제56조(교원의 교수시간) 본-대학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제8조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원의 책임시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장 교원의 교수시간</p> <p>제61조(교원의 교수시간) ①본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제8조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원의 책임시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0.2. .개정)</p> <p><u>②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0.2. .신설)</u></p>	<p>조 번호 변경</p> <p>전임교원 외 교원(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 명문화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장 교수회</p> <p>제57조(구성) ①본-대학교에 전체교수회를 두며, 학부별로 학부교수회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장 교수회</p> <p>제62조(구성) ①본교에 전체교수회를 두며, 학부별로 학부교수회를 둔다. (2020.2. .개정)</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②전체교수회는 본 대학교 교수로 구성하며, 학부교수회는 해당 학부소속 교수로 구성한다.</p> <p>제58조(의장 및 회의) ①전체교수회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 학부교수회의 의장은 학부장이 된다.</p> <p>②전체교수회는 총장 또는 전체교수 3분의 1 이상, 학부교수회는 학부장 또는 해당 학부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p> <p>③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9조(심의사항) 전체교수회 또는 학부교수회의는 학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교무위원회등 해당 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전공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63조(의장 및 회의) (좌동)</p> <p>제64조(심의사항)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장 교무위원회</p> <p>제60조(구성) ①본-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p> <p>②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학부장, 도서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p> <p>제61조(회의) ①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장 교무위원회</p> <p>제65조(구성) ①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u>(2020.2. 개정)</u></p> <p>②교무위원회는 총장, 대학원장, 처장, 부처장, 학부장, 도서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u>(2020.2. 개정)</u></p> <p>제66조(회의)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부총장 없음, 부처장 추가</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장이 된다.</p> <p>②교무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2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장학금 기타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수업 및 시험에 관한 사항 7. 학생지도, 장학, 상벌 및 후생에 관한 사항 8. 학부·전공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18장 위 원 회</p> <p>제63조(위원회) 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 및 폐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장 대학원</p> <p>제64조(대학원 학칙)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은 따로 정한다.</p>	<p>제67조(심의사항) (좌동)</p> <p>9.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2.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장 위 원 회</p> <p>제68조(위원회)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장 대학원</p> <p>제69조(대학원 학칙) 본교 일반대학원 학칙은 따로 정한다. (2020.2. 개정)</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제20장 학생 활동</p> <p>제65조(학생단체) 학생은 자치능력과 지도력을 신장하여 스스로를 계발하고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하여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p> <p>제66조(학생생활지도)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는 해당학부의 교원이 분담한다.</p> <p>제67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연구 등 대학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기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p> <p>제68조(행사의 신고) 학생단체가 교내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지정된 양식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9조(간행물) 학생단체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0장 학생 활동</p> <p>제70조(학생단체) (좌동)</p> <p>제71조(학생생활지도) (좌동)</p> <p>제72조(금지활동) (좌동)</p> <p>제73조(행사의 신고) (좌동)</p> <p>제74조(간행물)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장 학칙개정·공포</p> <p>제70조(학칙의 개정)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신규대비표로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7일간 사전공고하고 의견수렴 후 대학평의원회와 교무위원회(사안에 따라 법인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며, 본조는 대학(대학원포함)의 모든 학칙, 학칙과 관련한 시행세칙, 학사내규에 적용한다.</p> <p>제71조(학칙의 공포) 학칙의 개정 공포는 규정관리부서에서 관계서류(교무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장 학칙 개정·공포</p> <p>제75조(학칙의 개정)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신규대비표로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7일간 사전공고하고 의견수렴 후 대학 평의원회와 교무위원회(사안에 따라 법인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며, 본조는 대학(대학원포함)의 모든 학칙, 학칙과 관련한 시행세칙, 학사내규에 적용한다.</p> <p><u>(2020.2. 개정)</u></p> <p>제76조(학칙의 공포)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학사내규 개정(안) 심의서

1. 규정 개정 취지

- 학칙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체계화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2. 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입학 및 교육과정 관련 내용 신설, 학적 변동에 따른 절차 구체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졸업요건 명시 등

3. 신구대조표 (붙임 참조)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장 입학전형관리위원회·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좌동)</p> <p>제2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2020.2. .신설)</p> <p>제2조(입학) ①본교에 입학(편입학과 재입학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020.2. .신설)</p> <p>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나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020.2. .신설)</p> <p>2. 성적증명서(내신성적 포함) (2020.2. .신설)</p> <p>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020.2. .신설)</p> <p>②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020.2. .신설)</p> <p>제3조(편입학) ①편입학은 3학년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2020.2. .신설)</p> <p>②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편입학원서를 입학관리팀에 제출하고 구술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2020.2. .신설)</p> <p>제4조(학사편입학) ①학사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른다. (2020.2. .신설)</p> <p>②입학시험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2020.2. .신설)</p> <p>③학사편입한 자는 재학기간 2년(4학기)동안에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의</p>	<p>제2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신설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에 대한 내용 명문화 조 번호 추가</p> <p>조 번호 추가</p> <p>조 번호 추가</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2조(정의) 학생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의 시행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p> <p>제3조(구성) ①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교무지원차장, 학부장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자</p>	<p>1/2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20.2. .신설)</p> <p>제5조(재입학) ①재입학은 직전학년도 또는 학기의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2020.2. .신설)</p> <p>②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재입학원서를 입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2. .신설)</p> <p>③재입학은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최종 승인한다. (2020.2. .신설)</p> <p>제6조(학점인정기준) ①편입학한 학생의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총 65학점을 인정한다. (2020.2. .신설)</p> <p>②편입학생의 학점인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20.2. .신설)</p> <p>제7조(성적처리) 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편입학한 이후의 성적만을 가지고 총 평점평균을 산출하며, 성적부상의 표기는 전적대학 인정학점만 표기한다. (2020.2. .신설)</p> <p>제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학생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의 시행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2020.2. .개정)</p> <p>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대한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2020.2. .신설)</p> <p>제9조(구성) (2020.2. .삭제)</p>	<p>조 번호 추가</p> <p>조 번호 추가</p> <p>조 번호 추가</p> <p>조 번호 추가</p> <p>타 위원회의 경우 세부내용은 규정이나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입학전형관리위원회·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도 학사내규에서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없음</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간사와 서기) 각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전공의 선택</p> <p>제8조(전공의 선택) ①학부의 전공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 1. 불교인문학부에는 불교학전공을 둔다.</p> <p>— 2. 공공정책학부에는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경영학전공을 둔다.</p> <p>②2학년 1학기 진급 시 학부 내 전공 중 1개의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수사모집 특별전형 입학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 전공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특정 전공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학부내 전공별 배정인원을 본인 희망과 성적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복수전공·자율설계전공</p> <p>제9조(전공의 배정) 삭제</p> <p>제10조(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의 범위) ①복수전공의 대상은 모든 학과로 한다.</p> <p>②자율설계융합전공은 전공의 제한 없이 자율설계 할 수 있다.</p> <p>③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은 입학학번 이전의 학과(전공)을 선택 할 수 없다.</p> <p>제11조(복수전공·자율설계전공 신청 및 취소) ①복</p>	<p>제13조(간사와 서기) (2020.2. .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전공선택 (2020.2. . 개정)</p> <p>제14조(전공결정) ① (삭제) (2020.2. . 삭제)</p> <p>②학부별로 입학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속 학부의 전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선택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0.2. .개정)</p> <p>③전공선택은 2학기에 신청하여 3학기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020.2. .개정)</p> <p>④전공선택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특정 전공에 희망학생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2020.2. . 개정)</p> <p>제4장 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 (2020.2. . 개정)</p> <p>제15조(전공의 배정) 삭제</p> <p>제16조(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의 범위) (좌동)</p> <p>제17조(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 신청 및 취소)</p>	<p>조 번호 변경</p> <p>전공선택에 대한 내용 보완</p> <p>조 번호 변경 자율설계융합전공으로 명칭 통일</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내에 복수전공 이수(취소)신청서(별지서식 1)를 교무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다.</p> <p>②자율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초 지정된 기간내에 자율전공이수신청서(별지서식 1-1호)를 교무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다.</p> <p>제12조(교과목 이수 및 학점) ① (삭제)</p> <p>②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 이수신청 이전에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p> <p>③자율설계융합전공 신청학생이 이수한 졸업인증제과목과 교양과목도 자율설계융합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전과</p> <p>제13조(전과범위) 전과의 대상은 모든 학과로 한다.</p> <p>제14조(시행시기 및 인원) ①전과는 매 학년도 지정 기간에 시행하며, 전과 인원은 전입 받는 학과 입학정</p>	<p>(2020.2. . 개정)</p> <p>①3학기부터 5학기까지 재학 중인 자는 복수전공 및 자율설계를 신청할 수 있다. (2020.2. .신설)</p> <p>②복수전공을 이수(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복수전공 이수(취소)신청서를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다. (2020.2. . 개정)</p> <p>③자율설계융합전공을 이수(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자율설계융합전공 이수(취소)신청서를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다. (2020.2. . 개정)</p> <p>④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의 이수(취소)신청은 재학기간 중 각 1회에 한한다. (2020.2. .신설)</p> <p>제18조(교과목 이수 및 학점) ①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 <u>승인 이전에</u>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 <u>교과목은 승인 이후 이 수구분변경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할 경우 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u></p> <p>(2020.2. . 개정)</p> <p>②자율설계융합전공 신청학생이 이수한 졸업인증제과목과 교양과목도 자율설계융합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전과</p> <p>제19조(전과범위) 전과의 대상은 모든 학과(<u>전공</u>)로 한다. (2020.2. . 개정)</p> <p>제20조(시행시기 및 인원) ①전과는 매 학년도 지정 기간에 시행하며, 전과 인원은 전입 받는 학과 입학정</p>	<p>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의 신청기간 구체화</p> <p>조 번호 변경 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내용 명문화</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원의 10%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통상통역학 전공의 경우 전공배정인원을 감안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② 삭제</p> <p>제15조(자격요건)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2학기 이상의 학기를 이수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시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3학기 이상의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과 이전까지의 학년 수료학점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기 이수자 : 졸업학점의 2/8 - 3학기 이수자 : 졸업학점의 3/8 - 4학기 이수자 : 졸업학점의 4/8 - 5학기 이수자 : 졸업학점의 5/8 - 6학기 이수자 : 졸업학점의 6/8 - 7학기 이수자 : 졸업학점의 7/8 2. 전과 이전까지의 총 성적평점평균 3.00이상 3.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과별로 지정한 기준 <p>제16조(절차) ①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신청서(별자서식 2)를 교무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교무지원처장은 전과신청서를 취합하여 전과 지원을 받은 학과장에게 발송한다.</p> <p>③학과장은 필요한 전형과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교무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p> <p>④교무지원처장은 학부에서 선발한 결과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전과를 확정 및 공고한다.</p>	<p>원의 10%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지 및 통합되는 학과(전공)의 경우 전과신청을 할 수 없다.</p> <p>(2020.2. . 개정)</p> <p>② 삭제</p> <p>제21조(자격요건) ①2학기 이상의 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5학기까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다. (2020.2. . 개정)</p> <p>다만, 수시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3학기 이상의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2020.2. . 개정)</p> <p>②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20.2. .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과 이전까지의 학년 수료학점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기 이수자 : 졸업학점의 2/8 - 3학기 이수자 : 졸업학점의 3/8 - 4학기 이수자 : 졸업학점의 4/8 - 5학기 이수자 : 졸업학점의 5/8 2. (좌동) 3. (좌동) <p>제22조(절차) ①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p> <p>(2020.2. . 개정)</p> <p>②교학지원처장은 전과신청서를 취합하여 전과 지원을 받은 학부장에게 발송한다.</p> <p>③학부장은 필요한 전형과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p> <p>④교학지원처장은 학부에서 선발한 결과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전과를 확정 및 공고한다.</p>	<p>전과신청 제외사항 명문화</p> <p>조 번호 변경 전과 자격요건 명시</p> <p>전과 자격요건이 5학기까지 제한함에 따라 6학기 이수자, 7학기 이수자 삭제</p> <p>조 번호 변경 전과신청 시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p> <p>교무지원처장에서 교학지원처장, 학과장에서 학부장의 직제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⑤ 삭제</p> <p>제17조(교과이수)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교과목 이수는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변경이 승인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p> <p>제6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이수 삭제</p> <p>제18조(위원회) 삭제</p> <p>제19조(구성) 삭제</p> <p>제20조(심의사항) 삭제</p> <p>제21조(회의) 삭제</p> <p>제22조(보고) 삭제</p> <p>제23조(간사와 서기) 삭제</p> <p>제24조(교육과정 편성) 삭제</p> <p>제25조(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편) 삭제</p> <p>제26조(교양과정의 이수) 삭제</p> <p>제27조(전공과정의 이수) 삭제</p> <p>제28조(일반선택과목의 이수) 삭제</p> <p>제29조(재이수) 삭제</p> <p>제30조(복학자, 재입학자의 이수) 삭제</p> <p>제7장 수업</p>	<p>제23조(교과이수) (좌동)</p> <p>제6장 교육과정 (2020.2. . 개정)</p> <p>제24조(구성) ①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졸업인증과목으로 구성된다. (2020.2. .신설)</p> <p>②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0.2. .신설)</p> <p>제25조(교양과정) ①교양과목은 교양교육센터에서 편성하여 로터스칼리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020.2. .신설)</p> <p>②교양과목은 5개 학문 영역(학문기초, 인성기초, 균형학문, 창의융합, 글로벌소통)별로 구분하여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으로 편성한다. (2020.2. .신설)</p> <p>제26조(전공과정) ①전공과목은 전공회의를 통해 편성하여 전공주임교수가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020.2. .신설)</p> <p>②전공교육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공인정과목으로 지정된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2020.2. .신설)</p> <p>제27조(위원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2020.2. .신설)</p> <p>제7장 수업</p>	<p>조 번호 변경</p> <p>교육과정 재신설 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31조(개설교과목 제출 및 승인) 삭제</p> <p>제32조(수업시간표 작성) ①교양과목은 글로벌교양학 부장이 작성하고, 학과(전공)별 전공과목 시간표는 각 학부장이 전공별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여 매학기 종강 15일 이전에 교무지원처에 제출한다. 교무지원처는 제출된 수업시간표를 검토 및 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이전까지 공고한다.</p> <p>②교과목의 수업시간표 편성은 주중에 균형있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교양과정 : 교양필수과목을 우선 편성하고, 교양선택과목은 학문영역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p> <p>2. 전공과정 : 전공과목은 학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p> <p>③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28조(교과목 개설) ①매학기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부장은 이전 학기 종강 1개월 전까지 교학지원처에 해당 교과목을 제출하여야 한다.</p> <p>(2020.2. .신설)</p> <p>②교학지원처장은 개설교과목에 대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p> <p>(2020.2. .신설)</p> <p>제29조(수업시간표) ①교양과목 시간표는 교학지원처에서 작성하고, 전공과목 시간표는 학과(전공)별 협의로 자체 작성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한다. 교학지원처는 제출된 수업시간표를 검토 및 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이전까지 공고한다. (2020.2. .개정)</p> <p>②확정된 수업시간표는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0.2. .신설)</p> <p>제30조(강의계획서 제출) 교수는 매 학기 수강신청 3주전까지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2. .개정)</p> <p>제31조(교외수업) ①실험, 실습, 관찰 등 수업목적에 따라 교외에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 학부장은 교외(현장)수업 신청서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외수업 결과보고서를 시행 후 7일 이내에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2. .신설)</p> <p>②전항의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학생이 다른 과목의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학부장은 담당교수에게 사전 통보하여 교과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조 번호 변경 교과목 개설 절차 명문화</p> <p>조 번호 변경 수업 관련 내용 명문화(수업시간표, 강의계획서, 교외 수업 신설)</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33조(수업시간의 단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으로 한다.</p> <p>제34조(분반) 개설교과목에 대한 분반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양필수과목, 졸업인증제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관련 과목 : 20명 - 컴퓨터관련 과목 : 50명 - 기타 과목 : 50명 2. 교양선택과목 : 교양필수과목의 기타과목 기준을 적용 다만, 실습(실험)이 수반되는 과목의 경우 30명 3. 전공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실험)이 수반되는 과목: 25명 - 기타 과목 : 40명 <p>제35조(폐강) ①수강신청변경까지의 수강인원이 교양과목은 10명 미만, 전공과목은 5명 미만일 경우 폐강</p>	<p>다. (2020.2. .신설)</p> <p><u>③교외수업은 학기당 1회로 제한하되, 교과운영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020.2. .신설)</u></p> <p>제32조(석사학위과정 과목 수강) ①석사학위과정 과목 이수 신청자격은 학부 4학년으로 학업성적이 평점 평균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2020.2. .신설)</p> <p>②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2과목 6학점 이내이며, 학기당 정해진 이수 학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020.2. .신설)</p> <p>③학점인정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2020.2. .신설)</p> <p>제33조(수업시간의 단위) (좌동)</p> <p>제34조(분반) 각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분반할 수 있으며, 분반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20.2. .개정)</p> <p>(좌동)</p> <p>제35조(폐강) (좌동)</p>	<p>학칙 제38조(학위과정의 연계) 신설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과목 수강에 대한 내용 추가</p> <p>분반에 대한 정의</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을 원칙으로 한다.</p> <p>②수강인원이 개설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p> <p>제36조(휴강, 결강과 보강) 학칙에서 규정하는 휴업일에 휴강하거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결강이 필요한 경우 담당교수가 사전에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별지서식 3)를 교무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7조(지각의 결석처리) 결석 1회에 해당하는 지각 또는 조퇴횟수는 3회로 한다.</p>	<p>제36조(휴강, 결강과 보강) 학칙에서 규정하는 휴업일, <u>공휴일 및 공무에 의하여</u> 휴강하거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결강이 필요한 경우 담당교수가 사전에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별지서식 3)를 <u>교학</u>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u>학기 종료 후 교학지원처는 수업결손 점검을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원업적평가 및 강사 재임용 등에 반영한다.</u> (2020.2. . 개정)</p> <p>제37조(출석 및 결석) ①강의 담당교수는 매 교시마다 수강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2020.2. . 신설)</p> <p>②<u>교학지원처는 3주 누적 무단 결석자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여야 한다.</u></p> <p>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u>4분의 3이상</u>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2020.2. . 신설)</p> <p>③8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은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제1항 적용 예외로 할 수 있다. (2020.2. . 신설)</p> <p>④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산한다. (2020.2. . 개정)</p>	<p>지각으로 국한하지 않고 출석 및 결석 내용으로 변경</p> <p>수업관리를 위하여 휴가 및 보강 사유를 구체화하고 수업 결손을 점검하여 수업의 내실화를 제고함</p> <p>출석부 관리를 명확히 하고 무단 결석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함.</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38조(공결처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처리원(별지서식 4)을 교무지원처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p> <p>— 1.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소집된 때 : 실제 소요기간</p> <p>— 2. (삭제)</p> <p>— 3. 직계 존비속의 결혼 : 2일 이내</p> <p>— 4. 직계 존비속의 사망 : 5일 이내</p> <p>— 5. 각종 대내외 공식행사 및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제 소요기간</p> <p> </p> <p>제39조(결석처리 기산일) 결석처리 기산일은 개강일로 하고 종료일은 종강일로 한다. 다만, 수강신청 변경, 개강후 전역의 복학으로 출석하지 못한 기일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수강신청</p>	<p>제38조(공결처리) ①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을 받은 공결처리원(별지서식 4)과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0.2. .개정)</p> <table border="1" data-bbox="784 462 1433 1029"> <thead> <tr> <th>공 결 사 유</th> <th>결석허용 한계</th> </tr> </thead> <tbody> <tr> <td>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td> <td>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td> </tr> <tr> <td>2.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td> <td>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td> </tr> <tr> <td>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 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td> <td>2주</td> </tr> <tr> <td>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td> <td>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td> </tr> <tr> <td>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 실습 참가</td> <td>해당기간</td> </tr> <tr> <td>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td> <td>해당기간</td> </tr> <tr> <td>7.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td> <td>해당기간</td> </tr> <tr> <td>8. 종단에서 실시하는 행사</td> <td>연 1회에 한하여 인정</td> </tr> <tr> <td>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td> <td>해당기간</td> </tr> </tbody> </table> <p>(2020.2. .신설)</p> <p>제39조(결석처리 기산일) 결석처리 기산일은 개강일로 하고 종료일은 종강일로 한다. 다만, 수강신청 변경, <u>개강 후</u> 전역의 복학으로 출석하지 못한 기일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수강신청</p>	공 결 사 유	결석허용 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2.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 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 실습 참가	해당기간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해당기간	7.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8. 종단에서 실시하는 행사	연 1회에 한하여 인정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기간	<p>공결처리 기준 마련</p>
공 결 사 유	결석허용 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2.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 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 실습 참가	해당기간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해당기간																					
7.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8. 종단에서 실시하는 행사	연 1회에 한하여 인정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기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40조(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수강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1조(신청방법)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신청한다. 단, 4학년 학생은 졸업학점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42조(신청학점) ①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 내자 21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4학년은 15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은 23학점까지, 성적경고자는 12학점(예비성적경고자는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제43조(수강신청 철회) ①개강후 이수 중인 교과목 또는 새로이 이수할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변경은 개강후 지정된 기간에 실시한다. ②수강신청을 하여 이수중인 교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후 3주 이내에 해당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내역서(별지서식 5)에 철회교과목을 기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4조(계절학기 수강)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p>	<p>제40조(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수강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u>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사유가 된다.</u> (2020.2. . 개정)</p> <p>제41조(신청방법)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u>본교</u>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신청한다. 단, 4학년 학생은 졸업학점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42조(신청학점) ①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 <u>부터</u> 21학점<u>까지</u> 신청할 수 있다. (2020.2. .개정) 단, 4학년은 15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 (좌동)</p> <p>제43조(수강신청 철회) ①<u>개강 후 이수중인</u> 교과목 또는 새로이 이수할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변경은 <u>개강 후</u> 지정된 기간에 실시한다. (2020.2. . 개정) ②수강신청을 하여 이수중인 교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u>개강 후 3주 이내</u>에 해당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내역서(별지서식 5)에 철회교과목을 기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계절학기 (2020.2. . 신설)</p> <p>제44조(계절학기) ①<u>계절학기 수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각각 개설할 수 있다.</u> (2020.2. . 신설) ②<u>폐강기준은 학사내규 제34조를 준용한다.</u> (2020.2.</p>	<p>수강신청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명문화</p> <p>9장 (계절학기) 신설</p> <p>계절학기에 관련된 내용 구체화</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u>. 신설)</u> <u>③수강대상 학생은 매 학기별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0.2. . 신설)</u> <u>④수강신청한 과목이 폐강된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020.2. . 신설)</u> <u>⑤수강신청 학생은 기일 내에 총장이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감액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수강신청취소의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료를 반환하되, 폐강과목과 계절학기 개강 전 수강신청취소의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2020.2. . 신설)</u> <u>1. 총 수업일수 3분의 1 이전 :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2020.2. . 신설)</u> <u>2. 총 수업일수 2분의 1 이전 :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2020.2. . 신설)</u> <u>3. 총 수업일수 2분의 1 후 : 수강료 반환 없음 (2020.2. . 신설)</u> <u>⑥기타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2020.2. . 신설)</u> <u>제45조(수업시간 및 평가관리) ①수업은 3주 이상으로 편성하되,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2. . 신설)</u> <u>②담당교수는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평가를 하여야 하며, 성적평가 방법은 제49조를 준용한다. (2020.2. . 신설)</u> <u>③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기학기에서 취득한 성적과 달리 관리한다. (2020.2. . 신설)</u></p>	<p>타 대학(충남대, 동국대, 건양대 등)의 경우 6학점으로 제한</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시험 및 성적</p> <p>제45조(시험의 구분) ①시험은 정기시험, 비정기 시험으로 구분한다.</p> <p>1. 정기시험 :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나누며 중간시험은 학기당 수업일수 2분의 1이 되는 주에 실시하고, 학기말시험은 학기의 최종 주에 실시한다.</p> <p>2. 비정기 시험 : 과제학습, 세미나 등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 책임하에 시행한다.</p> <p>②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은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성적제출일 이전에 별도의 시험에 응할 수 있다.</p> <p>제46조(시험의 관리) 교과목별 시험의 관리는 담당교수가 관리한다.</p> <p>제47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 ①시험부정행위자가 적발되면 감독교수는 그 행위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즉시 교학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교무지원처장은 총장에게 구두 보고한 후 학생상벌 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③근신처분을 받은 자는 그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F 등급을 부여하고, 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는 해당학기 전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p> <p>제48조(성적분포) ① 삭제</p> <p>②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선수과목을 이수하는</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시험 및 성적</p> <p>제46조(시험의 구분) (좌동)</p> <p>제47조(시험의 관리) (좌동)</p> <p>제48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 ① (좌동)</p> <p>②교학지원처장은 총장에게 구두 보고한 후 학생상벌 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③근신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F등급으로 부여하고, 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학기 전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무효로 한다.</p> <p>(2020.2. 개정)</p> <p>제49조(성적분포) ① 삭제</p> <p>②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선수과목을 이수하는</p>	<p>장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대학원생과 교환학생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명 이상인 교과목 : A등급(A+, A0, A-)은 40%이내, A등급(A+, A0, A-)과 B등급(B+, B0, B-)의 합은 80%이내로 한다. 10명 미만인 교과목 : 절대평가를 하되 A등급은 40% 이내로 한다. 해당인원 산정사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 A등급의 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인원으로 하고 A등급과 B등급의 합인 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인원으로 한다. 영어전용강좌 및 외국어강의, 현장실습 교과목 : 절대평가를 한다. <p>제49조(학적변동자의 성적처리) 휴학한 학생의 휴학 학기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학기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학기말 시험 종료 전에 입대휴학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간시험, 비정기 시험, 출석 및 과제물 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제50조(성적표의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성적열람기간을 거쳐 출석부와 함께 교무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1조(성적의 확인 및 정정) ①학생은 성적 열람기간 중 본인 성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성적에 대한 학생의 이의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p>	<p>대학원생과 교환학생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명 이상인 교과목 : A등급(A+, A0, A-)은 40%이내, A등급(A+, A0, A-)과 B등급(B+, B0, B-)의 합은 80%이내로 한다. 10명 미만인 교과목 : 절대평가를 하되 A등급은 40% 이내로 한다. 해당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 A등급의 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인원으로 하고 A등급과 B등급의 합인 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인원으로 한다. 영어전용강좌 및 외국어강의, 현장실습 교과목 : 절대평가를 한다. <p>제50조(학적변동자의 성적처리) (좌동)</p> <p>제51조(성적표의 제출) (좌동)</p> <p>제52조(성적의 확인 및 정정)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③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열람기간 후 1주 이내에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별지서식 6)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2조(성적경고자 학적부 기재)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2.00미만 또는 1.70미만으로 예비성적경고 또는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학적부에 기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졸업</p> <p>제53조(졸업의 기준) 졸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학기 : 8학카이상(조기졸업자는 6학카이상) 2. 취득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과정 취득학점: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을 포함하여 23학점 이상 25학점 이내로 하며 전공기초를 제외한 3개 이상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되 교양선택의 영역별 이수에서 2과목 이상은 외국어 강의 교과목 포함 - 전공과정 취득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전공 : 소속 전공의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 자율설계전공 : 자율설계하여 2개 전공별 교과목을 각각 30학점 이상, 또는 자율설계융합전공하여 60학점 이상. 단, 자율설계융합전공 최소이수학점은 각 전공별 20학점 이상 - 총취득학점 : 130학점 이상 3. 총 성적평점평균 : 2.00 이상(조기졸업자는 4.00 이상). 다만,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이 20학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교양선택과목 중에서 성적이 나쁜 	<p>제53조(성적경고자 학적부 기재)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졸업</p> <p>제54조(졸업의 기준) ①졸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학기 : 8학기 이상(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2. 취득학점 (2020.2. .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총 취득학점 : 130학점 나. 전공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단일전공 60학점 이상</u> · <u>복수전공 각각 42학점 이상</u> · <u>자율설계융합전공 : 자율설계하여 2개 전공별 교과목을 각각 30학점 이상, 또는 자율설계하여 2개 이상 전공별 교과목을 각각 20학점 이상 (2020.2. . 개정)</u> 3. 총 성적평점평균 : 2.00 이상(조기졸업자는 4.00 이상). 다만,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이 20학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교양선택과목 중에서 성적이 낮은 교과목 순으로 제외하고 성적평점평균 산출 4. 교육과정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20학년도 신입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교양과정 취득학점: 교양필수과목 33학점</u> · <u>영어인증제 합격</u> · <u>160골드 취득</u> 	<p>조 번호 변경</p> <p>장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p> <p>자율설계융합전공 학위명은 AB융합전공으로 한다.</p> <p>「영어인증제 운영규정」 제정 등 2020학년도 졸업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학년도별 졸업요건 명시</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교과목 순으로 제외하고 성적평점평균 산출</p> <p>4.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합격</p> <p>5. 졸업영어시험 및 컴퓨터 시험 합격</p> <p>6. 졸업인증제 영역별 이수</p> <p>제54조(졸업예정자 자격) 졸업예정자의 자격은 해당 학기(계절학기 제외)까지 졸업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로 한다.</p> <p>제55조(졸업사정 · 졸업유예) ①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사정은 교무지원처가 작성한 졸업사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체 전공별 각 1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졸업사정 교수회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p> <p>②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유예원(별지서식 7)을 졸업사정 이전에 교무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다.</p>	<p>나.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신입생 적용</p> <p>· <u>교양과정 취득학점: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을 포함하여 23학점 이상 25학점 이내로 하며 전공기초를 제외한 3개 이상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되 교양선택의 영역별 이수에서 2과목 이상은 외국어 강의 교과목 포함</u></p> <p>· <u>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합격</u></p> <p>· <u>졸업영어시험 및 컴퓨터 시험 합격</u></p> <p>· <u>졸업인증제 영역별 이수</u></p> <p>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p> <p>· <u>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u></p> <p><u>②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입학 당시의 교육 과정에 의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해당 학년의 입학 학년도 기준에 따른다. (2020.2. . 신설)</u></p> <p>제55조(졸업예정자 자격) (좌동)</p> <p>제56조(졸업사정 · 학사학위 취득 유예) ①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사정은 <u>교학</u>지원처가 작성한 졸업사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체 전공별 각 1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졸업사정 교수회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p> <p>②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유예원(별지서식 7)을 졸업사정 이전에 <u>교학</u>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다.</p> <p><u>③학사학위 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유예 기간 중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학칙 제24조 3항을 따른다. (2020.2. . 신설)</u></p>	<p>학년도별 졸업요건 구분하여 명문화</p> <p>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56조(졸업시험 실시) ①졸업시험을 실시하는 학과는 소속 학과(전공) 전임교원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문제의 출제, 채점 및 평가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②졸업논문 심사의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p> <p>③각 학부장은 학과(전공)별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결과를 졸업예정학기의 종강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자율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을 부과하지 않는다.</p>	<p>제57조(졸업시험 실시)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제57조(졸업영어시험 · 컴퓨터 시험) 졸업영어시험 및 컴퓨터 시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58조(졸업영어시험 · 컴퓨터 시험)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제58조(졸업시험, 졸업영어시험, 컴퓨터시험 불합격자의 처리) ①졸업시험, 졸업영어시험, 컴퓨터시험 불합격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나 수료증은 교부할 수 있다.</p> <p>②졸업시험, 졸업영어시험, 컴퓨터시험 불합격자는 수료 이후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p> <p>③동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취·창업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제59조(졸업시험, 졸업영어시험, 컴퓨터시험 불합격자의 처리) (좌동)</p>	<p>조 번호 변경</p>
<p>제59조(졸업인증제) 졸업인증제를 위한 각 영역별 이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어 : 26학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 14학점 이상 - 중국어 또는 일본어 : 12학점 이상 2. 컴퓨터 : 8학점 이상 3. 독서 : 4학점 이상 	<p>제60조(졸업인증제) 졸업인증제를 위한 각 영역별 이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어 : 26학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 14학점 이상 - 중국어 또는 일본어 : 12학점 이상 2. 컴퓨터 : 8학점 이상 3. 독서 : 4학점 이상 (2020.2. . 삭제) 	<p>조 번호 변경</p> <p>18학년 교육과정부터 독서과목 졸업요건 필수 폐지</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4. 봉사 : 1학점 이상</p> <p>제60조(조기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을 원하는 학기 중 신청기간에 조기졸업신청서(별지서식 8)를 교무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휴학·복학</p> <p>제61조(휴학의 구분)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장기인턴십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p> <p>제62조(휴학의 절차) ①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에 휴학원(별지서식 9)을 작성하여 교무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일반휴학자가 징집에 의하여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입영영장 사본 첨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③휴학기간 만료 후 재휴학을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④신입생 및 편입생(재입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p> <p>⑤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이내로 한다.</p> <p>⑥5항의 휴학에 따른 통산 휴학기간은 6학기까지로 한다. 단, 편입생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p>	<p>4. 봉사 : 1학점 이상</p> <p><u>제61조(조기졸업)</u>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u>조기졸업 직전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기졸업신청서(별지서식 8)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u> (2020.2. .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휴학·복학</p> <p><u>제62조(휴학의 구분)</u> (좌동)</p> <p><u>제63조(일반휴학)</u> ①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에 휴학원(별지서식 9)을 작성하여 <u>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u> (2020.2. . 개정)</p> <p>②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별지서식9)을 작성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2. . 신설)</p> <p>③2항의 휴학에 따른 통산 휴학기간은 6학기까지로 하고 편입생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020.2. . 신설)</p> <p>④신입생 및 편입생(재입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2020.2. . 신설)</p> <p>⑤3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2020.2. . 신설)</p>	<p>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을 위해 졸업 직전학기에 신청하여야 함</p> <p>장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p> <p>조 번호 변경 휴학에 대한 내용 구체화</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63조의1(입대휴학) ①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소정양식의 군입영신고서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2. . 신설)</p> <p>②입대휴학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자는 제적되며 일반휴학기간 중에 입대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로 입대휴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0.2. . 신설)</p> <p>③입대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2020.2. . 신설)</p> <p>④입대휴학한 자가 입영과 동시에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학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0.2. . 신설)</p> <p>제63조의2(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①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별지서식9)과 관련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2. . 신설)</p> <p>②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인 한 한 학기이며,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인 한 한 학기이다. 다만, 본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0.2. . 신설)</p> <p>제63조의3(장기인턴십휴학) ①장기인턴십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별지서식9)과 관련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2. . 신설)</p> <p>②장기인턴십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2</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63조(복학) ①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전에 매학기 지정된 복학기간(수강신청기간으로 대신함)에 복학하여야 한다.</p> <p>②복학신청은 수강신청으로 대신하며, 입대휴학자는 복학 학기에 전역증 사본(전역일이 개강일로 부터 3주 이내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을 교무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별지서식9)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2. . 신설)</u></p> <p><u>③장기인턴십 활동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020.2. . 신설)</u></p> <p><u>제63조의4(창업휴학) ①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별지서식9)과 관련 증빙서류를 창업보육센터를 경유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2. . 신설)</u></p> <p><u>②창업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별지서식9)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2. . 신설)</u></p> <p><u>③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020.2. . 신설)</u></p> <p><u>제64조(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전역 예정자 포함) 또는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원할 경우 매학기 지정된 기간 중에 복학원과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 복무중인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이 취소된다. (2020.2. . 신설)</u></p> <p><u>1. 질병휴학자 : 건강진단서 1통 (2020.2. . 신설)</u></p> <p><u>2. 입영휴학자 (2020.2. . 신설)</u></p> <p><u>가. 전역증(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 2통 (2020.2. . 신설)</u></p> <p><u>나. 주민등록초본 2통 (2020.2. . 신설)</u></p>	<p>복학에 대한 내용 구체화</p> <p>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②입대휴학한 자는 전역일 기준 학기말까지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할 수 없는 자는 교학지원처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일반휴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2. . 신설)</p> <p>③학기 중에 임신·출산 및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의 수업일수가 학기의 4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2020.2. . 신설)</p> <p>④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다만, 3항의 사유에 의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2020.2. .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1. (시행일자) 이개정 내규는 2020. 02.00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제60조(졸업인증제)는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입생(편입.재입학)까지 적용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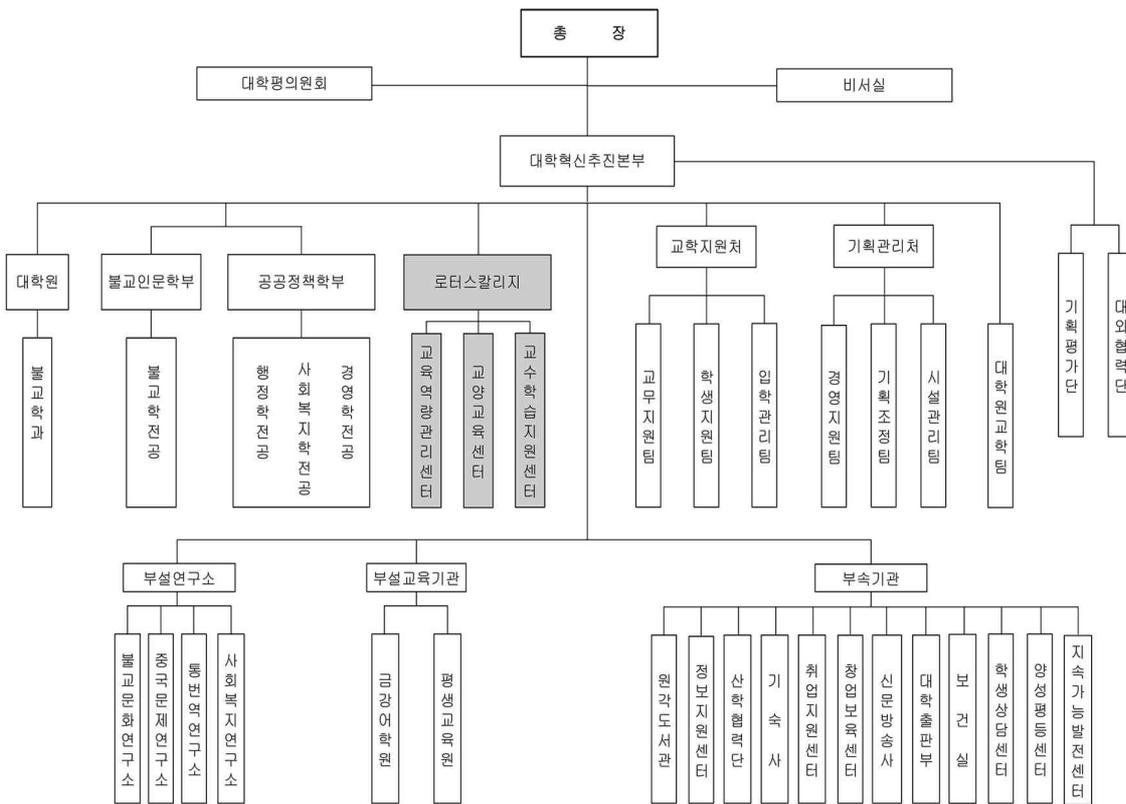
금강대학교 사무분장및위임전결 규정 개정(안) 심의서

1. 개정의 사유
 - 로터스칼리지 내 3개 센터(교육역량관리센터, 교양교육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와 기존의 취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센터를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함.
2. 개정의 주요내용(주요골자)
 - 규정 제4조(부서의 직제) ①항 별표1의 직제 및 편제 변경(로터스칼리지 조직 변경)
3. 금강대학교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 : 붙임 참조

개정전	개정후
<p>제4조(부서의 직제) ①본 대학 본부에 설치하는 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편제는 별표1과 같다.</p>	<p>제4조(부서의 직제) ①본 대학 본부에 설치하는 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편제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0.02.00></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이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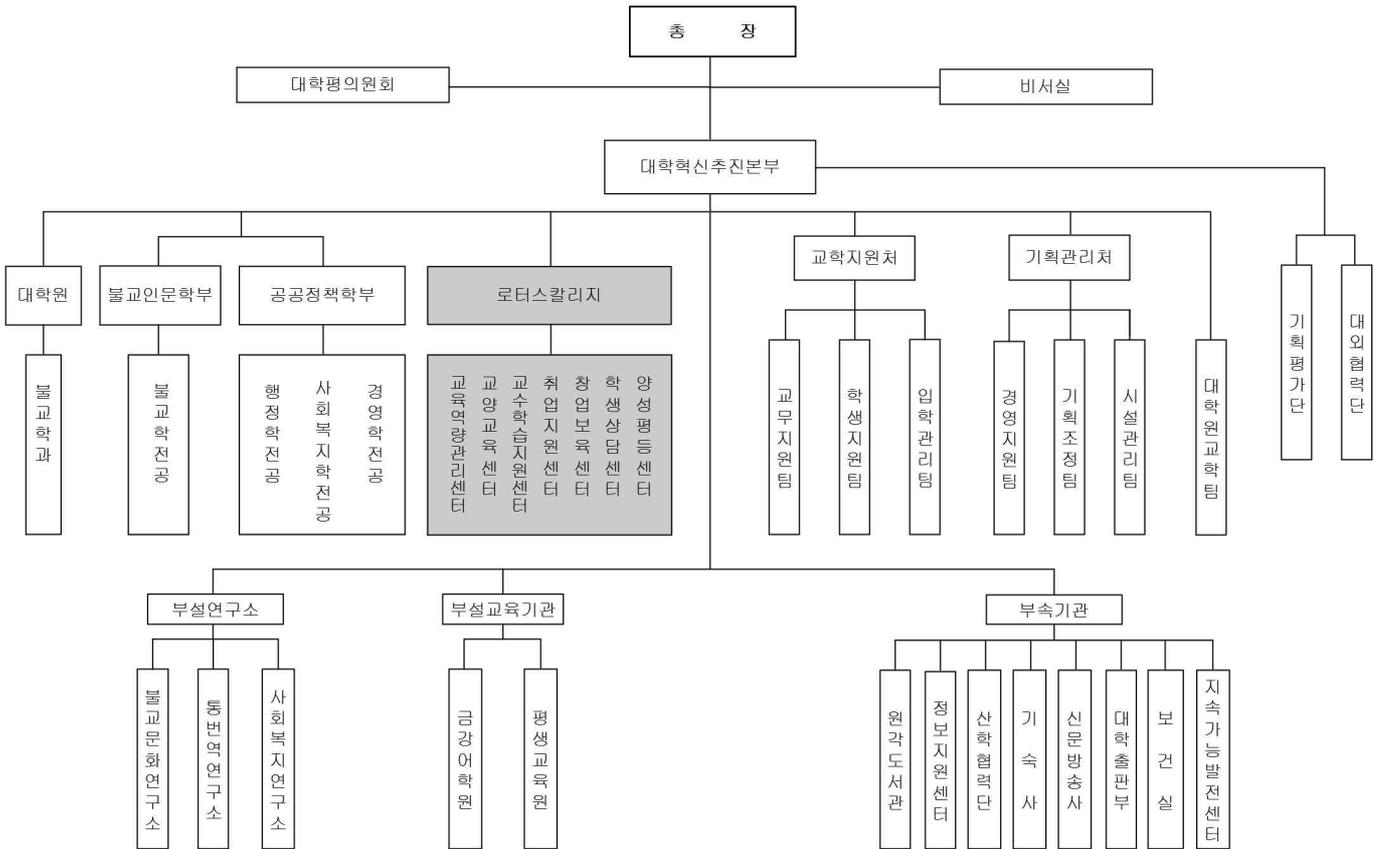
[변경 전]

(별표 1)



[변경 후]

(별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개정(안) 심의서

1. 규정 개정 취지

-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원칙 등 2020학년도 입학생에 적용되는 부분 개정

2. 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요건 중 졸업인증제가 폐지되어 개설 교과목이 줄어들에 따라 졸업인증제를 이수해야 하는 재학생의 학점 취득을 위한 방안 마련

3. 신구대조표(붙임 참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II-1. 위원회</p> <p>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p>가.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p> <p>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다. 전공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분석 보고서에 따른 전공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p>		<p>II-1. 위원회</p> <p>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p>가.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p> <p>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다. 전공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분석 보고서에 따른 전공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p> <p>라.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p>		<p>「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추가</p> <p>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20 학년도 이수기준 추가</p> <p>18학년 교육과정부터 독서과목 졸업요건 필수 폐지</p>							
<p>[별표1] 학년도별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원칙</p>		<p>[별표1] 학년도별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원칙</p>									
교육과정 적용기준	졸업(수료) 학점	교양과목		전공과목						졸업인증	일반선택과목
		최소이수점	최대이수점	최소이수학점							
		불교사회복지행정전공	통상통역학(영어, 일어, 중국어) 전공	불교학부 사회과 경영학부 글로벌학부	불교/사회복지학부 글로벌경영행정학부	불교문화학부	글로벌융합학부	불교인문학부 공공정책학부			
2018학년도	130	23	25	-	-	-	융합 60	39			제한 없음
2017학년도	130	23	25	-	-	-	융합 60	39			
2016학년도	130	13	20	-	-	-	융합 60	39			
2015학년도	130	25	35	-	-	-	단일전공: 60	-	-	-	
							복수전공: 42				
2012학년도	130	25	35	-	-	-	단일전공: 60	-	-	-	
							복수전공: 42				
2010학년도 3학년 이상 재학생	140	33	42	단일전공: 60	-	-	-	-	-	-	
				복수전공: 42							
				단일전공: 69 (공통영어 3과목 포함)							
				복수전공: 57 (공통영어 3과목 포함)							
2020학년도	130	33		-	-	-	-	-	단일전공: 60 복수전공: 42(42) 자유선택융합전공: 30(30), 20(20)(20)	없음	
2018학년도	130	23	25	-	-	-	융합 60	34			
2017학년도	130	23	25	-	-	-	융합 60	39			
2016학년도	130	13	20	-	-	-	융합 60	39			
2015학년도	130	25	35	-	-	-	단일전공: 60 복수전공: 42				
2012학년도	130	25	35	-	-	-	단일전공: 60 복수전공: 42				
2010학년도 3학년 이상 재학생	140	33	42	단일전공: 69 (공통영어 3과목 포함)							
				복수전공: 57 (공통영어 3과목 포함)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택과목을 포함하여 25학점 이상 35학점 이내로 하며 각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p> <p>※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양과정 취득학점은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을 포함하여 13학점 이상 20학점 이내로 이수하여야 한다.</p> <p>※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양과정 취득학점은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을 포함하여 23학점 이상 25학점 이내로 하며 교양선택과목은 전공 기초를 제외한 3개 이상 영역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p>	<p><u>해당 언어의 졸업인증 교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교과를 전공 교과와 졸업인증교과로 중복 인정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공 외국어 관련 교과를 졸업인증 교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이수구분정정신청서를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u></p> <p><u>※ 졸업인증 컴퓨터 영역 학점은 전공, 교양 교과로 편성 및 개설된 모든 컴퓨터 교과를 해당 컴퓨터의 졸업인증 교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교과를 전공, 교양 교과와 졸업인증교과로 중복 인정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공, 교양 컴퓨터 관련 교과를 졸업인증 교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u></p>	

교육과정품질평가규정 개정(안) 심의서

1. 규정 개정 취지

- 로터스칼리지 운영규정 제정(2019.09.0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폐지에 따라 수행 주체 변경

2. 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교양교육과정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평가 및 분석 등의 수행 주체를 교양교육센터로 변경

3. 신구대조표(붙임 참조)

현행	개정(안)
<p>제2조(품질 평가)</p> <p>③교양 교육과정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p>	<p>제2조(품질 평가)</p> <p>③교양 교육과정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u>교양교육센터</u>에서 담당한다.</p>

국내 및 해외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심의서

1. 규정 개정 취지

- 미국 뉴욕시립대 지클린 경영대학과의 교류합의에 따라 'GGU Global Ambassador'를 신설·운영하고자 함

2. 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자격, 연수기간, 연수비용, 학점인정 등 뉴욕시립대와 합의된 내용 추가

3. 신구대조표(붙임 참조)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장기 해외유학’은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대학 및 기관에서 학기 중에 교류협정에 근거한 지원 혹은 본교의 지원을 받아 수학함을 말한다.</p> <p>2. ‘단기 해외연수’는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 또는 기관에서 동·하계 방학 중에 본교의 지원을 받아 수학함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좌동)</p> <p>3. ‘GGU Global Ambassador’는 해외 대학과 교류합의에 의해 2년 동안 본교의 지원을 받아 수학함을 말한다.</p>				미국 뉴욕시립대 지클린 경영대학과 교류합의에 따라 ‘GGU Global Ambassador’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p>제4조(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여 본교의 학부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 국내와 해외 연수 및 학점취득 자격을 부여하며, 지원 자격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p> <p>1. 학부과정 재학생은, 2학년부터 국내와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졸업 직전의 마지막 학기에는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를 제한한다.</p>			<p>제4조(자격) (좌동)</p> <p>1. 학부과정 재학생은, 2학년부터 국내와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졸업 직전의 마지막 학기에는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를 제한한다.</p> <p>GGU Global Ambassador 학점교류 학생은 2년(4학기) 연수 후, 본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p>				‘GGU Global Ambassador’는 2+2.25 *본교2년(4학기), 해외대학2년(4학기), 본교0.5년(1학기)														
<p>제4조(자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장기 해외유학 (한 학기, 두 학기)</th> <th>단기 해외연수 (방학 중 4-8주)</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자격</td> <td>①2학기 이상 이수 (이수예정 포함) ②평점 2.7 이상 ③해당 언어권 어학 선수과목 이수(8학점, 예정 포함)</td> <td>2학기 이상 이수 (이수 예정 포함)</td> </tr> </tbody> </table>			구분	장기 해외유학 (한 학기, 두 학기)	단기 해외연수 (방학 중 4-8주)	지원 자격	①2학기 이상 이수 (이수예정 포함) ②평점 2.7 이상 ③해당 언어권 어학 선수과목 이수(8학점, 예정 포함)	2학기 이상 이수 (이수 예정 포함)	<p>제4조(자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장기 해외유학 (한 학기, 두 학기)</th> <th>단기 해외연수 (방학 중 4-8주)</th> <th>GGU Global Ambassador (2년: 3~4학년)</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자격</td> <td>①2학기 이상 이수 (이수 예정 포함) ②평점 2.7 이상</td> <td>2 학기 이상 이수</td> <td>①4학기 이상 이수 (이수 예정 포함) ②본교 취득학점 45</td> </tr> </tbody> </table>				구분	장기 해외유학 (한 학기, 두 학기)	단기 해외연수 (방학 중 4-8주)	GGU Global Ambassador (2년: 3~4학년)	지원 자격	①2학기 이상 이수 (이수 예정 포함) ②평점 2.7 이상	2 학기 이상 이수	①4학기 이상 이수 (이수 예정 포함) ②본교 취득학점 45	미국 뉴욕시립대 지클린 경영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건임
구분	장기 해외유학 (한 학기, 두 학기)	단기 해외연수 (방학 중 4-8주)																			
지원 자격	①2학기 이상 이수 (이수예정 포함) ②평점 2.7 이상 ③해당 언어권 어학 선수과목 이수(8학점, 예정 포함)	2학기 이상 이수 (이수 예정 포함)																			
구분	장기 해외유학 (한 학기, 두 학기)	단기 해외연수 (방학 중 4-8주)	GGU Global Ambassador (2년: 3~4학년)																		
지원 자격	①2학기 이상 이수 (이수 예정 포함) ②평점 2.7 이상	2 학기 이상 이수	①4학기 이상 이수 (이수 예정 포함) ②본교 취득학점 45																		

<p>또는 공인어학능력시험 기준 점수 취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공인어학능력시험 기준 점수</p> <p style="text-align: center;">英: ToEIC 600점, 中: 신HSK 4급, 日: JPT 450점</p> </div>	<p>③ 해당 언어권 어학 선수 과목 이수(8학점, 예정 포함) 또는 공인어학능력시험 기준 점수 취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공인어학능력시험 기준 점수</p> <p style="text-align: center;">英: ToEIC 600점, 中: 신HSK 4급, 日: JPT 450점</p> </div>	<p>(이수 예정 포함)</p>	<p>학점 이상 이수 ③ 평점 3.0 이상 ④ 졸업인증제 3P 통과 ⑤ 공인어학능력시험 기준 점수 취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공인어학능력시험 기준 점수</p> <p style="text-align: center;">토플BT 80점 이상 IELTS Academic Level 6.5 Pearson Academic 53</p> </div>	
<p>제5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p> <p>1. 해외와 국내 타 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인정하는 연수기간은 통산 두 학기 이내로 하되, 국내에서의 학점교류는 한 학기 이내로 제한한다.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의 해외연수, 국내 타 대학에서의 계절학기 등 단기 학점교류의 경우는 연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p> <p>1. 해외와 국내 타 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인정하는 연수기간은 통산 두 학기 이내로 하되, 국내에서의 학점교류는 한 학기 이내로 제한한다.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의 해외연수, 국내 타 대학에서의 계절학기 등 단기 학점교류의 경우는 연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u>단, GGU Global Ambassador 학점교류 학생은 2년(4학기)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u></p>	<p>미국 뉴욕시립대 지클린 경영대학으로 '편입학'하는 형식이므로 2년(4학기) 이수해야 함</p>		
<p>제6조(연수비용)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p> <p>1. '장기 해외유학'의 경우, 본교와 해외대학 간 교류협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교류협정 내용에 명시되지</p>	<p>제6조(연수비용) (좌동)</p> <p><u>3. 'GGU Global Ambassador'의 경우,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소요되는 학비 중 일부를 본교에서 지원한다. 다만, 2년(4학기) 연수 후 본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u></p>	<p>'GGU Global Ambassador' 신설에 따른 장학금 추가</p>		

않은 사항은 파견시점의 상황에 맞춰 별도로 정한다.

2. ‘단기 해외연수’의 경우,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수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본교에서 지원한다.

구분		장기 해외유학		단기 해외연수
		두 학기	한 학기	
대우 조건	영어권	학비 부분지원		소요경비 부분지원
	중국, 대만	해외 대학별 교류협정 내용에 따름	학비 지원	
	일본	내용에 따름		

제7조(취득학점 인정) 취득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재학 중 최대 3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2.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연수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3. 해외 대학 및 국내 타 대학 연수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 4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취득을 인정한다.
5. 해외 이수 교과목의 학점, 이수구분, 명칭,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
학점 및 명칭	①교과목 명칭은 현지 그대로 인정함. ②본교 시수를 기준으로 학기당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하되, 세부 조건은 별도로 정함. ③해외에서의 본교 이수 교과를 재수강하거나 해외에서 이수한 교과를 본교에서 재수강 하는 것은 일체 불허함.

구분		장기 해외유학		단기 해외연수	GGU Global Ambassador
		두 학기	한 학기		
대우 조건	영어권	학비 부분지원		소요경비 부분지원	학비 부분지원
	중국, 대만	해외 대학별 교류협정 내용에 따름	학비 지원		
	일본	내용에 따름			

제7조(취득학점 인정) 취득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단, GGU Global Ambassador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연수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3. 해외 대학 및 국내 타 대학 연수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 4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취득을 인정한다. **단, GGU Global Ambassador 학점교류 학생은 제외한다.**
5. 해외 이수 교과목의 학점, 이수구분, 명칭,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
학점 및	①교과목 명칭은 현지 그대로 인정함. ②본교 시수를 기준으로 학기당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16

뉴욕시립대학교 지클린 경영대학에서는 6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따라서 2년 동안 매학기 최대 16학점씩 이수해야 충족 가능함

	<p>명칭 학점까지 인정하되, 세부 조건은 별도로 정함. ③해외에서의 본교 이수 교과를 재수강하거나 해외에서 이수한 교과를 본교에서 재수강 하는 것은 일체 불허함.</p>											
<p>제8조(선발기준 및 절차) 선발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세부 선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00 526 929 718"> <thead> <tr> <th>구분</th> <th>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th> </tr> </thead> <tbody> <tr> <td>선발 기준</td> <td>①학점 50%, ②면접 50% (골드 수, 기숙사 상·별점, 본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내 행사 참여도,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등 반영)</td> </tr> </tbody> </table>	구분	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	선발 기준	①학점 50%, ②면접 50% (골드 수, 기숙사 상·별점, 본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내 행사 참여도,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등 반영)	<p>제8조(선발기준 및 절차) 선발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세부 선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974 454 1814 782"> <thead> <tr> <th>구분</th> <th>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th> <th>Global Ambassador</th> </tr> </thead> <tbody> <tr> <td>선발 기준</td> <td>①학점 50%, ②면접 50% (골드 수, 기숙사 상·별점, 본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내 행사 참여도,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등 반영)</td> <td>①서류심사 50%(합격증, 학점) ②면접 50% (어학능력, 골드 수, 기숙사 상·별점, 본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내 행사 참여도,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등 반영)</td> </tr> </tbody> </table>	구분	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	Global Ambassador	선발 기준	①학점 50%, ②면접 50% (골드 수, 기숙사 상·별점, 본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내 행사 참여도,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등 반영)	①서류심사 50%(합격증, 학점) ②면접 50% (어학능력, 골드 수, 기숙사 상·별점, 본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내 행사 참여도,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등 반영)	<p>‘GGU Global Ambassador’ 신설에 따른 선발기준 추가</p>
구분	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											
선발 기준	①학점 50%, ②면접 50% (골드 수, 기숙사 상·별점, 본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내 행사 참여도,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등 반영)											
구분	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	Global Ambassador										
선발 기준	①학점 50%, ②면접 50% (골드 수, 기숙사 상·별점, 본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내 행사 참여도,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등 반영)	①서류심사 50%(합격증, 학점) ②면접 50% (어학능력, 골드 수, 기숙사 상·별점, 본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내 행사 참여도,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등 반영)										
<p>제9조(취득학점 인정절차) 취득학점의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내 및 해외 연수 참가자는 연수가 끝나는 즉시 해당 대학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취득학점 인정절차) 취득학점의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내 및 해외 연수 참가자는 <u>연수기간 중 매학기 종료일에</u> 해당 대학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명서나 성적증명서, <u>전공인정(이수구분변경)요청서, 결과보고서</u> 등 제반 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본교 입장에서는 교환학생으로 파견하는 형식이므로 매학기 교환학생으로 처리하여 ‘학년 진급’을 시켜야 함.</p>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심의서

1. 규정 개정 취지

- 교원의 보직 보임 시 임면 시행권한 조정(제113차 이사회 후속조치)
-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영향력 행사 등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예방대책 수립 요구(교육부)

2. 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부이사장이 보직 임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에 대한 사례 등 명시

3.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30조(보직자의 임면) 본 대학교의 각 부서에서 정한 직책에 교원으로 보임할 경우 그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실시한다.</p>	<p>제30조(보직자의 임면) 본 대학교의 각 부서에서 정한 직책에 교원으로 보임할 경우 그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실시한다. <u>단, 이사장의 사전전결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실시할 수 있다.</u></p>
	<p>(신설)</p> <p>제33조의10(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교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직무 관련자 중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직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직무 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학부생, 대학원생, 직무 관련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강의전담교원 임용규정 개정(안) 심의서

1. 규정 개정 취지

- 대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거나 성과가 있는 강의전담교원을 일반전임교원으로 승진임용하여 고용 안정성 보장 및 신분 상승 기회 부여

2. 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일반전임교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9조의1(승진임용) ①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강의전담교원에 대해 승진심사 계획을 이사장이 승인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은 강의전담교원을 일반전임교원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u></p> <p><u>②승진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u></p>

교원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지침 개정(안) 심의서

1. 규정 개정 취지

- 연구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과목 확대, 교육경력 제고 등을 통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로터스칼리지 및 대학평가준비전략운영단 신설로 인한 보직 교원의 책임시수 부여
- 공과대학, 이과대학 등 학과별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실습·실기과목의 강의시간 인정률 폐지

2. 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9시간까지 초과강의료 지급 가능
- 로터스칼리지원장·부원장, 대학평가준비전략운영단장의 책임시수 부여

3.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강의시간) ②교과목당 강의시간의 계산은 별표 2의 교과목 유형별 강의시간 인정률에 따른다.</p> <p>제5조(강의료의 지급) 강의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p> <p>4.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연구원이 담당하는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주당 6시간까지 초과강의료를 계산하여 지급한다.</p>	<p>제4조(강의시간) ②삭제</p> <p>제5조(강의료의 지급) 강의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p> <p>4.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연구원이 담당하는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주당 6시간까지 초과강의료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최대 9시간까지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별표1] 전임교원 책임시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책임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처장</td> <td>3</td> </tr> <tr> <td>대학원장, 학부장, 불교문화연구소장, 기초교양교육원장</td> <td>6</td> </tr> <tr> <td>도서관장, 대학원학과장, 산학협력단장, 기숙사총사감, 기타 부속기관 또는 부설기관의 장, 불교문화연구소부소장</td> <td>8</td> </tr> <tr> <td>일반교수(교육유형)</td> <td>9-12</td> </tr> <tr> <td>일반교수(연구유형)</td> <td>6-9</td> </tr> </tbody> </table>	구 분	책임 시간	처장	3	대학원장, 학부장, 불교문화연구소장, 기초교양교육원장	6	도서관장, 대학원학과장, 산학협력단장, 기숙사총사감, 기타 부속기관 또는 부설기관의 장, 불교문화연구소부소장	8	일반교수(교육유형)	9-12	일반교수(연구유형)	6-9	<p>[별표1] 전임교원 책임시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책임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처장</td> <td>3</td> </tr> <tr> <td>대학원장, 학부장, 불교문화연구소장, 로터스칼리지원장, 대학평가준비전략운영단장</td> <td>6</td> </tr> <tr> <td>도서관장, 대학원학과장, 산학협력단장, 기숙사총사감, 기타 부속기관 또는 부설기관의 장, 불교문화연구소부소장, 로터스칼리지부원장, 전공주임</td> <td>8</td> </tr> <tr> <td>일반교수(교육유형)</td> <td>9-12</td> </tr> <tr> <td>일반교수(연구유형)</td> <td>6-9</td> </tr> </tbody> </table>	구 분	책임 시간	처장	3	대학원장, 학부장, 불교문화연구소장, 로터스칼리지원장, 대학평가준비전략운영단장	6	도서관장, 대학원학과장, 산학협력단장, 기숙사총사감, 기타 부속기관 또는 부설기관의 장, 불교문화연구소부소장, 로터스칼리지부원장, 전공주임	8	일반교수(교육유형)	9-12	일반교수(연구유형)	6-9
구 분	책임 시간																								
처장	3																								
대학원장, 학부장, 불교문화연구소장, 기초교양교육원장	6																								
도서관장, 대학원학과장, 산학협력단장, 기숙사총사감, 기타 부속기관 또는 부설기관의 장, 불교문화연구소부소장	8																								
일반교수(교육유형)	9-12																								
일반교수(연구유형)	6-9																								
구 분	책임 시간																								
처장	3																								
대학원장, 학부장, 불교문화연구소장, 로터스칼리지원장, 대학평가준비전략운영단장	6																								
도서관장, 대학원학과장, 산학협력단장, 기숙사총사감, 기타 부속기관 또는 부설기관의 장, 불교문화연구소부소장, 로터스칼리지부원장, 전공주임	8																								
일반교수(교육유형)	9-12																								
일반교수(연구유형)	6-9																								
<p>[별표2] 교과목 유형별 강의시간 인정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강좌유형</th> <th>정의</th> <th>강의시간 인정률</th> </tr> </thead> <tbody> <tr> <td>강의중심 과목</td> <td>해당분야의 이론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로 강의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td> <td>실제 시간수의 100%</td> </tr> <tr> <td>강의 및 실습 실기과목</td> <td>이론을 가르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험, 실습, 실기를 행하는 교과목</td> <td>이론의 시간은 실제 시간의 100%, 실습실기 시간은 실제 시간의 50%</td> </tr> <tr> <td>실습, 실기과목</td> <td>강의 없이 실험, 실습, 실기를 통하여 수업하는 교과목</td> <td>실제 시간의 50%</td> </tr> <tr> <td>지도과목</td> <td>실험, 실습, 실기과목으로 담당교수·강사가 조교의 도움 없이 직접 규정 시간 전체를 지도하는 교과목</td> <td>실제 시간수의 100%</td> </tr> </tbody> </table>	강좌유형	정의	강의시간 인정률	강의중심 과목	해당분야의 이론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로 강의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	실제 시간수의 100%	강의 및 실습 실기과목	이론을 가르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험, 실습, 실기를 행하는 교과목	이론의 시간은 실제 시간의 100%, 실습실기 시간은 실제 시간의 50%	실습, 실기과목	강의 없이 실험, 실습, 실기를 통하여 수업하는 교과목	실제 시간의 50%	지도과목	실험, 실습, 실기과목으로 담당교수·강사가 조교의 도움 없이 직접 규정 시간 전체를 지도하는 교과목	실제 시간수의 100%	<p>[별표2] 삭제</p>									
강좌유형	정의	강의시간 인정률																							
강의중심 과목	해당분야의 이론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로 강의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	실제 시간수의 100%																							
강의 및 실습 실기과목	이론을 가르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험, 실습, 실기를 행하는 교과목	이론의 시간은 실제 시간의 100%, 실습실기 시간은 실제 시간의 50%																							
실습, 실기과목	강의 없이 실험, 실습, 실기를 통하여 수업하는 교과목	실제 시간의 50%																							
지도과목	실험, 실습, 실기과목으로 담당교수·강사가 조교의 도움 없이 직접 규정 시간 전체를 지도하는 교과목	실제 시간수의 100%																							

금강대학교 학사지도교수 운영규정 규정 개정(안) 심의서

1. 개정의 사유
 - 학사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본교 전임교수만 학사지도교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본교 교원 전체로 확대하기 위함.
2. 개정의 주요내용(주요골자)
 - 규정 제3조(임명) ①항 변경
3. 학사지도교수운영규정 개정(안) : 붙임 참조

신구대조표

개정전	개정후
<p>제3조(임명) ①지도교수는 학부장이 배정하되 각 학부 및 전공소속 전임교수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3조(임명) ①지도교수는 학부장이 배정하되 본교 교원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2.00></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이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시간강사 운영지침 폐지(안) 심의서

1. 규정 폐지 취지

-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기존 규정 폐지

2. 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의 법적지위, 신분보장, 교수시간, 임용 등을 명시한

3. 폐지 규정(붙임 참조)

시간강사운영지침

제 정	:	2003. 10. 1
개 정	:	2010. 6. 1
폐 지	:	2020. 2. 0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강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시간강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간강사는 본 대학교에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며 교양 또는 전공교과목의 수업(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①시간강사는 학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경력 산출은 전임교원의 경력 산출 기준에 따른다.

②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강의를 담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무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시간강사의 추천) ①시간강사의 추천은 개설교과목에 따라 교과목의 개설학기 직전 학기말에 소속 학부장(전공주임교수 경우) 또는 교무지원처장이 적임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시간강사의 추천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강사 신상기록부는 재추천의 경우는 생략한다.

1. 시간강사 추천서(지정양식) 1부
2. 시간강사 신상기록부(지정양식) 1부

제5조(시간강사의 위촉 및 기간) ①시간강사의 위촉은 총장이 하며, 위촉기간은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에 명시한 위촉학기에 한한다.

②위촉된 시간강사는 위촉기간, 주당담당시수, 계약 조건 등을 명시한 시간 강사위촉 계약서(별지 1)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간강사로 위촉된 자에게는 필요시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의무) 시간강사로 위촉된 자는 수업과 관련된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 및 위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수업평가 결과가 부적절 하다고 판정된 자
3. 본 대학교 시간강사 위촉기간이 통산 5년을 초과한 시간강사는 추천 및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담당시간) ①시간강사의 담당시간 산출은 강의 또는 실습을 구분하지 않고 담당할 실제 수업시간으로 한다.

② 시간강사가 본 대학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수업시간은 주당 9시간 이내로 한다.

제9조(보수) 시간강사의 보수는 담당할 강의시간에 대하여 매 학년도 초에 정한 시간강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방학기간 중의 보수는 시간강의료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00일부로 폐지한다.